

국 • 내 • 입 • 법 • 의 • 견 • 조 • 사

제 9 호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1993. 8.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2 · 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박상철

선임연구원 김창규

연구원 배승희

목 차

제 1 편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 | |
|--|----|
| I. 문제의 소재 | 5 |
| II. 정치관계법제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 | 7 |
| 1. 각종 선거법제에 관한 입법의견 | 7 |
| 1) 대표제형식 선거구 등 선거제도 문제 | 7 |
| ① 소선거구제의 유지 / 7 ② 중·대선거구 등의 도입 / 9 | |
| ③ 선거구획정의 개선 / 11 | |
| 2) 전국구제도의 개선 | 13 |
| 3)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선거비용 문제 | 16 |
| 4) 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 22 |
| 5) 통합선거법 논의 | 33 |
| 6) 기타 | 34 |
| ① 여론조사공표 / 34 ② 군부재자투표 / 35 ③ 기탁금제도 / 36 | |
| ④ 투개표관리 / 37 ⑤ 선거연령 및 여성의 정치참여 / 37 | |
| ⑥ 장애자의 투표참여 / 38 ⑦ 기타의견 / 39 | |
| 2. 정당법 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 42 |
| 1) 지구당 성립요건의 완화 및 지구당 존폐 문제 | 42 |
| 2) 당내질서의 민주화와 공천제도의 개선 | 44 |
| 3) 정당운영과 정치비용 | 46 |
| 4) 정당가입제한 | 47 |
| 5) 기타 | 48 |
| 3. 정치자금에 관한 입법의견 | 50 |

| | |
|---|----|
| 1) 후원회 기탁금 기부제 등 | 50 |
| 2) 국고보조 | 53 |
| ① 확대의견 / 54 ② 축소의견 / 54 ③ 기타의견 / 55 | |
| 3) 당 비 | 56 |
| 4) 기 타 | 57 |
| III. 외국의 입법례와 입법방향 | 5 |
| 1. 외국의 입법례 | 52 |
| 2. 우리의 입법추진현황과 입법방향 | 54 |
| 【참고자료】 정치관계법제의 연혁 | 65 |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소개

| | |
|----------------------|-----|
|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81 |
| 1. 최근입법의견목록 | 82 |
| 2. 최근입법의견요지 | 84 |
| II. 최신법령목록 | 113 |

제 1 편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I. 문제의 소재

각종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정치관계법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퇴영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개혁입법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깨끗하고 돈 안드는 정치’와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정치’라는 시대적·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정당·국회 및 관계기관의 개선노력이 활발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1993.8.13)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 각 공화국의 단절된 정치목표의 추구나 집권당의 안정세력기반구축의 지나친 욕구, 그리고 입법관계자의 자의적인 입법태도¹⁾가 정치개임에서의 공정한 게임규칙을 인위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수정·폐기하여 버림으로써 정치관계법에는 상호갈등관계에 있는 법조항들과 그 규범적 의미에 반하는 제도가 수두룩하다.

따라서 현행 정치관계법제의 개선을 위하여는 새로운 정치환경과 입법 현실을 동시에 감안하는 매우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자세가 요망되고 있다. 요즈음 ‘미국식 정치제도’, ‘영국형 선거제도’ 등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²⁾ 있는 것도 돈 만들고 깨끗한 선거 및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려는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정치현상이란 한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즉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을 기초로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제도의 경우 외국제도의 도입 및 이식은 불가피한데 중요한 것은 수용된 제도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의 반응, 그리고 수용후 정착·변형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법규범과 정치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에 정확히 착근하는 것이다.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은 자칫 법규범과 현실간의 이중적 구조를 또다시 초래할 우를 범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이익집단의 특수적 대표성의 증대로 탈정당화현상

1) 대표제형식(소·중·대선거구제 및 소수·다수대표제 등)의 개정이나 선거구 획정 및 정치자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였다.

2) 경향 1993.8.18,2면; 세계일보, 1993.8.24,1면.

내지는 정당퇴조현상³⁾이 노정되어 유럽과 같은 책임정당(Responsible Party)으로의 개혁을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책임정당론'은 비미국식 발상으로 오히려 시민의 정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비판⁴⁾에 부딪혀 그 제도개혁이 설득력을 잃은 바가 있다.

일국의 정치제도개혁은 무엇보다 자국의 정치문화와 자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무엇보다도 먼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행될 경우 개혁작업에 있어서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망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은 개혁의 욕구로 충일되어 정치관계법제의 개선은 실로 천재일우의 호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1991.1~1993.8)에 제기된 정치관계법의 개선을 위한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쟁점사항 별로, 즉 각종 선거법제에 관한 입법의견은 대표제형식·선거구 등 선거제도 문제, 선거구획정 및 전국구제도의 개선,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선거비용문제, 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통합선거법 등, 정당법 개정에 관한 입법의견은 지구당 성립요건의 완화 및 지구당 존폐문제, 당내질서의 민주화와 공천제도의 개선, 정당운영과 정치비용, 정당가입제한 등, 정치자금에 관한 입법의견은 후원회·기탁금·기부제 등, 국고보조, 당비 등으로 수록·소개하여,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다양한 입법의견들이 표출·집약되는 입법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모음집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히 각종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법률 등 정치관계법에 관한 입법의견을 총망라하여 소개하는 것은 정치관계법이 그 어느 분야보다 관계법규간에 여러 측면에서의 상호관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치관계법제가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내지는 개선되도록 일조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 3)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정당퇴조현상에 대하여 David Truman, "Party Reform, Party Atrophy, and Constitutional Chang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99, No.4(Winter 1984~5); Everett C. Ladd, "Party Reform and the Public Interes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2, No.3(Fall 1987); Gerald Pomper, "The Decline of Party in American Elec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92, No.1(Spring 1977) 등의 논문은 전당대회의 중요성 감소와 예비선거제도의 확산 등을 그 주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그 극복방안으로 선거때 후보자 아닌 당을 통한 정부지원, 중간전당대회 개최, 예비 선거제도의 축소 등을 제시하여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책임을 증가시킬 것을 강조 한다.
 - 4) Leon Epstein, Political Parties in the American Mold(Madison : Wisconsin, Wisconsin Univ. Press 1970), p.35

II. 정치관계법제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

1. 각종 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법제에 관한 입법의견

1) 대표제형식·선거구 등 선거제도 문제

○ 현 법

제41조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선거구) 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와 전국선거구(이하 “전국구”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제15조(지역구의 획정과 의원정수) ①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 그러나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1개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16조(지역구의 변경)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제15조제3항의 별표의 개정에 의하여 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조(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중원선거) ②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1개의 선거구안에 종전 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그 초과하는 의원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한다.

① 소선거구제의 유지

○ 이기택(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선거구제도로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자금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행 소선거구제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서울, 1993.4.15.,1면; 국민, 1993.4.16.,4면; 부산 「가야클럽 초청 토론회(1993.4.15.)」).

○ 박희태(민자당 의원)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나친 선거 비용문제를 거론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또한 선거비용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소선거구제가 나쁜 것만은 아

니다(한겨례, 1993.6.16.,2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 김영일(민자당 의원)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 지역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지만, 과거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나치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비례대표제였던 것처럼 비례대표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한 정당의 과반수 의석의 점유를 어렵게 하므로 군소정당의 난립과 정국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제도의 전환은 반대한다(한겨례, 1993.6.16.,2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 6.15.)」).
- 박상천(민주당 의원) 비례대표제는 지역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1구2인제의 중선거구제 또한 거여다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고,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치협상에서도 수월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한겨례, 1993.6.16.,2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 정균환(민주당 의원) 선거구제 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정서를 중시하여야 하므로 중선거구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한겨례, 1993.6.16.,2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서울, 1993.3.6.,1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선거구의 경우, 현 실정에서는 전국구제도를 없애고 전면적인 소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 (I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2호(1992), 113~119면); 『선거제도 및 풍토의 개혁』, 민자당 주최「신한국 정치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1993.4.16.)」; 국민, 1993.4.16.,4면; 동아 1993.4.17.,4면; 경향, 1993.4.17.,4면; 세계, 1993.4.17.,5면).
- 한영철(명지대 교수) 현행 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제는 운영의 효율만 살릴 수 있다면, 현재 우리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 유권자의 의식구조 개

혁, 금권선거의 방지와 공직자의 충립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것의 철저한 집행, 그리고 정헌의 민주화와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당헌의 공천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바람직한 선거제도』, 국회사무처 「국회보」(1992.2), 89면).

- **안병만(한국외국어대 교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구제도는 지역성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유권자에게 2표를 부여해 지역구의 후보에게 1표를, 다른 1표는 선호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2인 중선거구 병립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국민, 1993.6.15., 4면; 조선, 1993.6.16., 4면; 『선거관행 및 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1~2면).

② 중·대선거구 등의 도입

- **박준규(국회의장)** 돈 없는 지식인·중산층·근로계층의 엘리트들이 정치권에 충원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중·대선거구제 채택이 필요하다(관훈클럽 초청토론회, 1992.7.13; 중앙, 1992.7.14., 2면).
-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원장)** 대선거구제의 경우 제1당의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과열경쟁과 지역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중선거구제도 검토될 수 있으나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오히려 선거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선거구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동아, 1992.4.11., 3면; 세계 1993.4.11., 2면).
- **조부영 (민자당 사무부총장)** 엄청난 비용이 드는 조직을 갖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지양하려면 현행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서울, 1993.3.6., 4면).
- **이환의 (민자당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지역구관리비 때문에 돈안드는 정치가 실현될 수 없으므로 중·대광역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국민, 1993. 2.10., 4면).
- **주돈식(청와대 정무수석)** 현재의 지구당과 시·도지부의 정당구조 및

소선거구제가 존속하는 한 현실적으로 돈 안드는 선거·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선진국처럼 지구당과 시·도지부를 폐지하고, 후원회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를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경향, 1993.3.6., 1면).

- 윤정석(중앙대 교수) 현행 선거법의 개선방향으로서는 소선거구제 및 전국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서울, 1993.5.8., 5면;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 정세욱(명지대 교수) 현행 소선거제도와 전국구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약 16개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8명~2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제로 전환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28~130면; 의회정치연구소 주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1993.4.21),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개정 방향』, 58면).
- 박동서 (서울대 교수)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와 정당별 득표를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제로 하되 지방선거는 대도시부터 중선거구로 함으로써 대표성의 향상을 기해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2), 180~185면;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6.23)」, 8~19면; 조선, 1992. 11.19., 10면; 세계, 1992.3.17., 12면; 조선, 1992.5. 30., 4면; 동아, 1992.5.30., 5면).
- 양 건(한양대 교수)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택하면서 독일식의 혼합선거제처럼 현실의 조건에 맞도록 절충·보완하여야 한다(국민, 1993.6. 15., 4면; 조선 1993.6.16., 4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3~6면).
- 윤근식(성균관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적인 정당국가에로의 구조적 전환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례선거권제인 독일식의 '부분적으로 인물화된 비례선거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정당국가적 민

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론』, 의회정치연구소 주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1993.4.21), 9면).

- 박찬욱(서울대 교수) 선거구의 경우, 국회 총의석의 2분의 1은 소선거구 다수제에 의해 선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비례대표제를 하는 소선거구 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병용방식을 채택해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1993.4.30), 29~33면).
-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구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소선거구제 대신에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동아, 1993.4.14,5면; 한국프레스센타 주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1993.4.12), 11~17면).
- 엄기형(자유지성 300인 회원) 현행 선거법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정선거·탈법선거가 만발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72~173면).
-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현행 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도로 전환시켜야 하며, 정당연기명 비례대표제(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해서는 제반 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35~38면).
- 조성준(한국노총 홍보실장) 현행 선거구와 투표제도에 정당정책후보와 지역선거구후보에 대한 1유권자 2투표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전체의석의 비율을 균분하게 해야 한다(『90년대 정치발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향』,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25~29면).

③ 선거구획정의 개선

- 조세형(신민당 의원) 1:4로 인구편차가 벌어진 개별선거구의 인구기준만 가지고 중구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 인구 등가성의 대원칙을 받

아들여야 한다(『표의 등가성 확보와 선거공영제』,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69~72면).

- **안병만(한국외국어대 교수)** 현행 선거구개혁을 위하여 선거구의 크기 를 조정할 「선거구조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국 민, 1993.6.15.,4면; 조선, 1993.6.16.,4면; 『선거관행 및 제도개혁에 관한 소 고』,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1~2면).
- **박찬욱(서울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내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관리위원 회가 정기적으로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국회가 이 안에 근거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법정화해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의 개정방 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1993.4.30), 29~33면).
- **이갑윤(서강대 교수)** 현행 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 비례대표제가 타 당하지만 소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등의 선택보다도 오히려 전국구의석 의 폐지 또는 득표율에 의한 전국구 의석배분과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평등한 선거구획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서강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2), 255~257면).
- **김운용(성균관대 교수)** 선거구간의 인구불균형문제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세조사를 근거로 하여 분구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개정 을 정례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 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9면).
-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선거구 획정의 경우, 선거구의 획정을 기본적으 로 인구기준에 기초하여야 하나 지역성이나 행정구역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으로써 인구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인구편차의 적정범 위에 대해서는 25%의 편차를 인정하자는 견해(김철수)와 2:1의 편차를 한도로 보자는 견해(권영성)가 있으나 미국의 일부 판례처럼 25%의 편 차를 허용하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은 이를 정당화하는 보충기준의 정당 정도와 형량하여 판단하고 최대인구편차가 2:1 이상인 경우에는 위헌으 로서 부정해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고시계

(92.2), 120~125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선거구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연방선거법 제3조 2항과 같이 25%라는 허용편차를 명문의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정당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주최 「문민정부와 법제개혁 방향」 제35회 학술발표회(1993.3.20), 30~33면).

2) 전국구제도의 개선

○ 국회의원선거법

제29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 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전국구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전국구후보자명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제133조(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결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총 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지역구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이상인 정당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대하여 우선 1석씩을 배분한다.

③ 전국구의석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의석비율에 전국구의석수(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를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전국구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제143조(보궐선거) ② 전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김종필(민자당 대표) 당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전국구의원이 당을 떠나면서도 의원직을 가지려 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중앙, 1993.8.2, 1면).

- 김영구 (민자당 사무총장) 전국구의원은 지역구의원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되어있는 등 각당의 총선결과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자신을 전국구의

원에 당선시켜준 정당을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그대로 갖는 현행제도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선거제도의 개선작업때 전국구의원의 당적변경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아, 1992.12. 28.,1면; 동아, 1992. 12.29.,2면; 한국, 1992.12.29.,1면; 한겨례, 1992.12.29.,1면; 경향, 1992.12.29.,2면)

- 김종호(민자당 정책위의장) 전국구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동아, 1992.4. 11.,3면; 세계, 1993.4.11.,2면).
- 이기택(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현행 전국구제도가 사실상 잘못된 제도는 아니지만 여당은 논공행상을 위하여 이용하고 야당은 선거자금·정치자금의 모금에 일부 이용해 왔으므로, 이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전국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서울, 1993.4.15.,1면).국민, 1993.4.16.,4면; 부산 「가야클럽 초청 토론회(1993.4.15.)」.
-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전국구제도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살려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0~22면; 민자당 의원세미나(1993.4.9); 서울, 93.4.10.,3면; 세계, 93.4.29.,3면;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조선, 1992.11. 19.,10면).
- 김호진(고려대 교수)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폐지되어서는 안되므로 그 대체방안으로서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보고 특정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게 하여 그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의석수를 나누어 갖도록 하는, 즉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서구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9~30면; 서울, 1993.5.8.,5면;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 양 건(한양대 교수) 전국구제도의 경우, 의석을 득표율이 아닌 지역구 당선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제1당에게 특혜를 주었던 맹점을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당투표를 통해 그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국민, 1993.6. 15.,4면; 조선

1993.6.16., 4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정치관계 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3~6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 25), 143~149면; 조선, 1992.5.30., 4면; 동아, 1992.5.30., 5면; 한국, 1992.11. 13., 23면).

- 김운용(성균관대 교수)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국구 제도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9면).
-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전국구의석배분의 경우, ① 전국구의석배분을 지역구의석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② 지역구 총선거에서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에 의해 전국구의석배분을 배제하는 현행법상의 기본의석조항은 독일의 예처럼 봉쇄조항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③ 지역구에서의 국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여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제도는 직접선거원칙에 반하므로 독일의 예처럼 정당에 대한 투표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김문현, 『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고시계(92.2), 120~125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국구의석의 배분에 있어서 지역구 총선거에서 5석 미만을 차지한 경우, 현행 유효득표수 100분의 3 이상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매우 무리한 수치이므로 100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해야 하며 정당의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을 배분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정당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주최 「문민정부와 법제개혁 방향」 제35회 학술발표회(1993.3.20), 30~33면).
- 김은호 (변호사 · 전 변협회장) 전국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소수민의의 존중을 중시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추어 지역구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에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전국구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서울, 1992. 3.12., 10면).
- 한국일보 「철새정치인」과 「변절의원」이 빨불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구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구의원도 당적을 이

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한국, 1992.12.13.,23면; 한국, 1992.12.26.,1면; 한국, 1993.1.11.,2면; 한국, 1993.1.11.,2면; 한국, 1992.11.17.,1면).

- 조선일보 전국구 의원의 당직이 탈시 의원직 박탈문제는 국민감정과 달리 위험소지가 있다(조선, 1993.8.9.,1면).

3)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선거비용 문제

○ 헌법

제116조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대통령선거법

제79조(부담) ① 다음 각호의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운동원 및 연설원의 실비보상
3. 연설회의 소요경비
4. 확성장치·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5. 투표참관인의 수당
6. 방송시설이용료(제4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방송광고료, 신문광고료, 현수막·선전현판·홍보용 게시판의 제작·게시경비와 정견·정책집 및 소형인쇄물의 작성·배부에 필요한 경비
7.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제88조(지출보고서) ①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 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원등에 대한 실비보상) 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민주당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위해서 후보간 TV토론회의 활성화 및 선거비용의 국고부담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경향, 1992.3.14.,1면; 세계, 1992.6.19.,1면).

- 홍사덕(민주당 의원)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제도보다 선거운동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현행 선거운동의 개선방안으로서는 후보가 개인유세를 통한 유권자들과의 접촉 이외의 방법, 즉 현수막·정당단합대회·사랑방 좌담회 등의 방법에 의한 유권자들과의 접촉방법을 모두 폐지하고, 대신에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서 홍보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서울, 1993.6.16.,5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 조세형(신민당의원) TV·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연설·토론·광고 등을 허용하면서 선거비용의 국고보조를 추진하며, 각급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화하여 선관위가 선거인명부작성의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구제등재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기탁금대신 예납금으로 하여 그 금액을 인하하여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표의 등가성 확보와 선거공영제』,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69~72면).
- 임좌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게 하면서 그 내역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며, 공영비용전보제를 신설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1.7.25), 25~70면).
-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선거공보·선거포스터·유인물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면서 선거공영제를 확대시켜야 한다(『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0~22면; 민자당 의원세미나(1993.4.9); 서울, 93.4.10.,3면; 세계, 93.4.29.,3면;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조선, 1992.11.19.,10면)
- 안병만(한국외국어대 교수) 후보자 개인에게 선거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서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돈을 써야 하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구당의 기능을 축소 또는 개편하며, 금융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부정한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국민, 1993.6.15.,4면; 조선, 1993.6.16.,4면; 『선거관행 및 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1~2면).

- 정세욱(명지대 교수)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되, 특히 선거비용공영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를 가능한 한 늘리며, 선거기간중 정당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선거자금의 수입 지출을 공개하며 그 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28~130면; 의회정치연구소 주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1993.4.21),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개정 방향』, 58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선거경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여 선거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선거벽보의 제작과 부착·합동연설회 주관·방송출연 등 일체의 입후보자에 의한 대국민 의사표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주제하에 행하면서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입후보자가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직무수행과 그 조직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이어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2호(1992), 113~119면); 『선거제도 및 풍토의 개혁』, 민자당 주최 「신한국 정치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1993.4.16); 국민, 1993.4.16.,4면; 동아 1993.4.17.,4면; 경향, 1993.4.17.,4면; 세계, 1993.4.17.,5면)).
- 황수익 (서울대 교수)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① 모든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정착이 필요하고, ② 현수막·포스터·스피커 등 일체의 선거비품은 국가가 관할하도록 하되 후보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을 설득, 지지를 얻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며, ③ 선관위에 감시·고발 등의 재량권을 확대해주어야 하고, ④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세계, 1992.3.17.,12면).
- 양 건(한양대 교수) 선거운동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선거공보와 선전벽보, 현수막 등 기본적 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국민, 1993.6.15.,4면; 조선 1993.6.16.,4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 15)」, 3~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43~149면;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한국, 1992.11.13.,23면).

- **임혁백(이화여대 교수)** 국민이 민주주의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예산에 의한 정치자금의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대륙연구소주최 정책토론회 『대통령선거 이대로 좋은가』, 1992.11.17; 조선, 1992.11.19., 10면).
- **박찬욱(서울대 교수)** 정책경쟁위주의 선거운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송 시설을 이용한 정견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공영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의 공개를 도모하면서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는 공영제 뿐만 아니라 비용공영제도 정착시켜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1993.4.30), 29~33면).
- **박동서 (서울대 교수)**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아닌 자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고, ②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내의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일반에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③ 선거비용의 법정제한액은 현실화하면서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하고, ④ 후보자등록금(기탁금)의 경우, 기탁금의 액수를 점차 감축하다 궁극적으로 폐지하여 국고로 운영하는 공영제를 지향해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2), 180~185면).
- **김영래 (아주대 교수)** 선거가 끝나면 각당과 후보들은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하지만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서울, 1993.3.7., 5면).
- **김동환(변호사)** ① 선거비용의 경우, 기탁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더욱 확대실시하면서 그에 따르는 비용의 실비를 후보자들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비용예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② 선거운동원보수의 경우, 유급직원수를 확대하면서 그 유급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97~99면).
- **김상철(변호사)** 선거경비의 경우, 공개 및 사후심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55~157면).

- 이청수(KBS 해설위원장) 선거비용과 관련하여는 선거용 쿠폰을 발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31~139면).
- 엄기형(자유지성 300인 회원) 전면적인 공명선거제도를 도입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72~173면).
- 박희선 (세계일보 논설위원)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돈이 많이 듦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로 선거에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문제는 선거구제와는 별로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선거구제를 바꾸는 데 착안하는 것 보다는 선거공영제의 획기적인 확대·강화와 정치자금법 및 선거관계법의 실질적 개정, 선거법의 철저하고도 엄정한 집행·적용과 의식개혁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단적으로 말해 현재와 같이 '선거비용 신고액'이 누가 보나 실제와 틀리는 것인데도 그대로 넘어간다거나 선거법 위반사범들이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상태에서는 '돈안드는 선거'는 언제까지나 공염불일 뿐일 것이므로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매수·폭력·불법으로 얼룩졌던 영국의 선거풍토가 1883년 여야정치지도자들이 초당적 입장에서 부패행위를 한 후보자는 그 선거구에서 영구히 입후보를 못하게 하고, 사무장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했더라도 당선무효로 하는 등 강력한 내용들을 담은 「부패·위법행위방지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엄정히 집행·적용토록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듯이 당리당략적 차원을 넘어 문제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나선다면 우리도 '돈안드는 선거'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세계, 1993.2.20, 5면).
- 김명규(단국대 교수)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지역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1천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전국구 입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입후보자명부 제출시에 후보자마다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탁금제도도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국회의원선거법개정의 문제점』, 월간고시(92. 5), 15면).
-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기탁금제도의 경우, 기탁금의 액수가 너무 고액이므로 기탁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성실한 후보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 대

안의 마련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기탁금의 과다로 국고귀속금액이 커짐에 따라 입후보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지닌 기탁금의 원 취지가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고시계(92.2), 120~125면).

- 양 건(한양대 교수) 기탁금제도를 폐지하면서 기본적인 선거운동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1991.4.8), 12~13면).
- 정인봉(변호사)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1천만~2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득표하지 못하고 낙선할 때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도록 한 제34조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국민, 1992.3. 13., 2면).
- 조성준(한국노총 홍보실장) 선거공영제의 확대실시를 위해 선거제도운영을 공영화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며, 공영체제하의 선거운동내용을 다양화하여 알 기회와 알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선거비용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후보 기탁금제도는 폐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추천인의 참가제도를 두고, 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집회와 호별방문을 금지하며,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90년대 정치발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향』,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25~29면).
-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현행 기탁금제도를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실시하면서 선거운동주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해서는 제반 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35~38면).
- 김규칠(시민연대회의 참여본부 정책위원장) 기탁금을 대폭 줄이고 선거공영제를 확대실시하여야 하며, 정당원이건 아니건 추천인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조건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1991.4.8), 8~9면).

4) 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 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 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법

제3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가족"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100일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

제40조(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연설원 등) ⑦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및 연설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선거운동시 항상 달고 있어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40조(선거운동의 한계) 선거운동은 이 법에서 규정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55조의3(정당연설회) ①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추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2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정당활동은 제외한다)·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 **강신목(민자당 의원)**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의 경우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정치지망생의 사전 선거운동은 막도록 하고, 선거운동원들은 무제한 인정하되 유급 선거운동원은 없어야 한다(서울, 1993.6.16.,5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 **민주당** ① 정당후보자의 연설시간만큼 무소속후보자의 개인연설 시간이 허용되어야 하고, ② 관권선거방지를 위해 통반장제의 폐지 또는 선거운동원으로 전직한 통·반장의 제임용금지 및 선거기간중 공무원의 지방출장금지 등 제도적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③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부정선거조사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부정선거고발자의 포상 및 시민감시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경향, 1992.3.14.1면; 세계, 1992.6.19.,1면).
-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를 보장하도록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과열방지를 명분으로 유권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당당원단합대회의 제한, 선거운동기간의 단축, 현수막 폐지 등의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한겨례, 1992.6.14.2면)
- **정균환(민주당 의원)** 현행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포괄적인 제한 규제를 개정하여야 하고, 개인연설회를 부활하여야 한다(한겨례, 1993.6.16.,2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 **조세형(신민당 의원)** 선거운동을 이중적으로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규정의 삭제와 합동연설회의 개인연설회·정당연설회를 허용해야 한다(『표의 등가성 확보와 선거공영제』,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69~72면).
- **국민당** ① 선거일 한달전 정부주관의 공사를 금지하고, ②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통·반장과 예비군 중대장의 재임명은 영구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③ 국민의 선택의 폭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연설회는 물론 개인정견발표회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경향, 1992.3.14.,1면; 세계, 1992.6.19.,1면).
- **김광일 (국민당 최고의원)** 선거법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선거운동원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선거운동비의 명목으로 금전을

실포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안방에서 후보를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한겨례, 1992.9.26.,5면)

- **임좌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현행선거법의 개선방향으로서는 ① 개인연설회·후보자초청토론회·전화 및 개인면접 등을 허용하여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고,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게재사항에 대한 제한 등을 완화함과 아울러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후보자가 자기선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② 선거 법에 규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포괄적 제한금지규정은 폐지하여야 하고, ③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단속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민간단체의 감시기능을 법제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벌칙조항을 강화하여야 하며, ④ 현행 선거관리소송이 단심제로 되어 있는 것을 2심제로 전환하여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선거사무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고, ⑤ 국민정서상 후보자들을 직접 대변하는 옥외집회는 선거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선거운동기간을 줄이면 당연히 옥외집회도 줄어들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토론회를 위해서는 TV토론이 가장 적합하다(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1. 7.25), 25~70면).
-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등록후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0일 정도이지만 항상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각 정당들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정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아예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선거법상의 포괄적 제한규정(제35조)을 폐지 내지 완화하여야 한다(『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 (1993.4.28), 20~22면; 서울, 93.4.10.,3면; 세계, 93.4.29.,3면;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조선, 1992.11.19., 10면).
- **안병만(한국외국어대 교수)**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과감히 제한규정을 완화하면서 선거비용의 내역을 공개도록 하고, 아울러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국민, 1993.6.15.,4면; 조선, 1993.6.16.,4면; 『선거관행 및 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

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1~2면).

- 박윤흔(경희대 교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하며, ② 선거사법에 대하여 공정·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선언적으로 선거법에 규정하여 검찰·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고, ③ 현행 벌칙조항이 3년이하의 징역·1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량을 낮추되 벌칙 규정을 현실화하여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07~109면).
- 정세옥(명지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선거위원회로 개칭하여 중앙선관위의 위상을 높이고, 벌칙금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28~130면; 의회정치연구소 주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1993.4.21),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개정 방향』, 58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선거운동방법의 경우,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이 지나치게 규제적·억압적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존치시키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TV출연 내지 TV토론회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2호(1992), 113~119면); 『선거제도 및 풍토의 개혁』, 민자당 주최「신한국 정치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1993.4.16)」 (국민, 1993.4.16.,4면; 동아 1993.4.17.,4면; 경향, 1993.4.17.,4면; 세계, 1993.4.17.,5면)).
- 이영희 (인하대 교수) 공명정대한 대선을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단속기간을 임기만료 6개월전으로 포괄명시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명시해야 하지만 선거기간중에는 실제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규율이 안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구별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아예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일원화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며 개인연설회도 무제한 개최할 수 있도록 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시키는 반면, 선관위에 등록한 시민단체가 공명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최대한 보장하여 지원해야 한다.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 윤영오 (국민대 교수) 현행 대통령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①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유권자는 누구든지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후보자의 친지·지지자 등도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배지나 편 등은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 매표행위와 금품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현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③ 선거운동원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을 막는 측면이 있으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④ 후보지지자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적은 성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⑤ 정견·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간의 토론을 주선해 각 후보의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대륙연구소주최 정책토론회 「대통령선거 이대로 좋은가」, 1992.11.17). (조선, 1992.11.19., 10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행법의 선거운동제한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든 입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가 항상 위법자가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므로 향후 최고한의 규제로써 최대한을 적용하는 입법자세와 사법정책이 요구되어 진다(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32면).
- 양 건(한양대 교수)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일정한 범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당이 아닌 사회단체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대규모 옥외집회는 지양하고 개인연설회·언론매체를 통한 연설회·초청토론회·합동연설회 등을 확대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국민, 1993.6.15, 4면; 조선 1993.6.16, 4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1993.6.15)」, 3~6면).
- 이남영(숙명여대 교수) ① 유급선거운동원제를 폐지해야 하고, ② 선관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마련되었으나 선관위가 선거를 감시하고 단속할 법적 장치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선관위가 부정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제지하고 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처벌권을 가져야 한다(조선, 1993.5.11, 4면; 민주당 주최 「깨끗한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1993.5.10); 조선, 1992.5.30, 4면; 동아, 1992.5.30, 5면).
- 박세일(서울대 교수) 바람직한 선거운동의 방향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

기회를 늘리면서 돈과 사람이 덜 쓰이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옥외군중집회를 없애고 대중매체를 활용도록 해야 하는데 대중매체의 활용은 매주 1회 이상, 각 2시간씩 정도는 토론회를 주고 후보자는 물론이고 각 정당의 정책관계자들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동안 최소한 2회 이상의 후보자간 합동토론회가 있어야 하며 유급선거운동원수도 현재 시안에 규정되어 있는 8천명 수준보다 더 줄여야 한다(조선, 1992.5.30., 4면; 동아, 1992.5.30.5면).

- **박찬옥(서울대 교수)**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포괄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방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화를 통한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감시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 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1993.4.30), 29~33면).
- **박동서 (서울대 교수)** 선거운동의 경우, ① 공무원 등 선거관계자를 제외한 선거권을 가진 모든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불허해야 하고, ② 현행법상의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하면서 TV·라디오 연설회 등 대중매체를 통한 유세의 기회를 확대하되 방송연설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③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정책임안 책임자가 출연하는 TV·라디오 토론회를 법정화하고, ④ 신문광고와 더불어 방송광고도 허용하되 선거운동기간 내의 회수를 제한하며, ⑤ 옥외연설회는 금지하고, ⑥ 정견·정책자료집은 1종으로 소형인쇄물은 2종으로 제한함과 아울러 선거공보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인정하면서 공영제로 하며, ⑦ 현행법상 인정되는 현수막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은 폐지하여야 하고, ⑧ 연설회의 방법으로서는 후보자끼리 토론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특히 운동기간의 단축과 중앙당에 의한 운동을 억제해야 하고, 선거소송의 경우 ① 공평과 법칙의 제재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69조 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및 그 처벌조항인 제160조를 삭제하여야 하며, ② 선거사무장 및 회계 책임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일정한 범위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하고, ③ 현행 3월로 규정된 선거사법의 공소시효기간을 6월로 확대조정하면서 재판기간에 대해 제1심의 경우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판결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이 밖에 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위상을 향상시켜야 하고, ② 선거와 관련하여 경찰·검찰의 중립화를 이루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공명선거제도 확립방향』,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53~56면; 대륙연구소주최 「대통령선거 이대로 좋은가(1992.11.17)」 정책토론회;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6.23)』, 8~19면; 조선, 1992.11.19., 10면; 세계, 1992.3.17., 12면; 조선, 1992.5.30., 4면; 동아, 1992.5.30., 5면).

-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①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후보자의 가족까지 확장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일반국민은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므로써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어 자유 선거원칙에 반하고, ②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 제40조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고시계(92.2), 120~125면).
- 윤영일(방송위원회 수석연구원) 텔리비전방송이 그동안 선거보도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토대 위에서 과열선거라는 비생산적 정치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시간제한 등 선거법상의 제약을 풀기 위한 법개정이 선행되지 못할 경우 제3의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한겨레, 1992.11.4., 17면).
- 윤종현(변호사)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①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포괄적 제한 규정(제40조)을 삭제하고, 금지하거나 제한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하며, ② 개인연설회·좌담회 등의 금지 규정(제74조)은 삭제하고, 그 밖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여야 하며, ③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규정(제41조)은 삭제되되 다만 유급선거운동원의 수는 제한해야 하고, ④ 선거운동에서의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 사이의 차별(제44조, 68조)을 없애야 한다(『현행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1991.4.8), 41면).
- 김상철(변호사) ① 개인연설회와 합동연설회의 경우, 그 개최는 무제한적으

로 허용하되 군중동원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② 합동연설회장 등에서의 일사분란한 연호나 연속동작 또는 일정한 유니폼의 착용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로써 규제하도록 하면서 불이행 시에는 당해 후보자의 연설기회를 박탈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개인홍보물의 경우, 대형화되고 고급화됨으로써 선거내용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격 규제정도 이외는 전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55~157면).

- **신낙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선관위의 개선안중 유급과 무급선거운동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어 선거과열과 금품·향응제공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홍보유인물과 정책자료집 등이 선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므로 홍보유인물이 지나치게 남발되지 않는 선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육외대중집회는 금지해야 한다(조선, 1992.5.30., 4면; 동아, 1992.5. 30, 5면).
-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그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1992.12.13., 23면; 위헌심판 제정신청(1992.12.9)).
- **조성준(한국노총 홍보실장)** 노조를 비롯한 정치적 이익집단의 선거참여자 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투자기관 직원 등의 입후보제한은 철폐해야 한다(『90년대 정치발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향』,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25~29면).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현행 선거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포괄적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②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공고일 전에 사임하고 선거후 3년간 복직을 불허해야 하며, ③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금지행위의 폭도 확대해야 하며,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내에 선거비용 「감시감독특별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의 공개 및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며,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감시 시민단체 및 고발한 일반시민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92년도 하반기<공선협>

활동보고서, 『대통령선거법개정의 쟁점사항에 관한 공선협의 입장』 성명서(1992.8.19), 1993, 59면; '92년도 하반기<공선협> 활동보고서, 『국회의 올바른 선거법개정을 촉구한다』 성명서(1992.10.27), 1993, 59면).

- 강문규(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
① 현행법 38조의 '선거운동'의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② 선거운동은 규정된 방법이외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40조는 삭제돼야 하며, ③ 41조의 경우, 1항은 삭제하되 2항과 3항(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1항을 "후보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 이외에는 유급선거원을 둘 수 없다"로 해야 하고, ④ 개인연설회·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⑤ 선거사무소·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 지원기구를 둘 수 없다면서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허용하고 있는 44조 1항은 전면 삭제하되 2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42조를 위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⑥ 42조·43조·45조의 정당과 후보자를 정당 또는 후보자로 바꾸어야 하며, ⑦ 68조는 "정당활동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하고, ⑧ 100조 3항은 삭제해야 하며, ⑨ 100조 4항과 5항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추첨제로 하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⑩ 39조를 추첨이 끝나 기호가 부여된 직후부터 선거전일 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⑪ 28조 1항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지자체선거법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한다』,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15~21면).
- 김규칠(시민연대회의 참여본부 정책위원장) 현행 지자체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①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조직적 활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부득이 제한할 경우에는 그 규제가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② 선거에 있어서 일반시민과 정당원에 대해 허용할 것과 제한할 것을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1991.4.8), 8~9면).
- 홍성진(한국노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범위를 공무원 등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노동조합 등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노조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방의회선거 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1991.4.8), 11면).

- **한국언론연구원 설문조사** 대선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46.1%가 '후보자간의 텔리비전 토론'이라고 답했고 '텔리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은 30.3%, '선거장 유세'는 13.3%였다. 또한 미국과 같은 대선후보자들간의 텔리비전 토론의 필요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필요하다'가 45.6%,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7.1%로 전체 응답자의 82.7%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한국언론연구원,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1988). (한겨레, 1992.11.4, 17면).
- **김진배(정치평론가)** 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되 개인연설회·초청토론회·전화·호별방문 등의 선거방법이나 선전벽보·선거공고·소형인쇄물 등의 후보자선전물의 이용에 대하여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 않는다는 식의 규정을 마련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하고, ② 언론매체의 이용문제에 있어서는 그 방송시간이나 신문의 크기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며, ③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야 하고, ④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경찰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1991.7.25), 111~118면).
- **이철수(KBS 해설위원장)** 현행 선거법의 개선방향으로서 ① 개인연설회는 허용하되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다음 번 개인연설회 계획을 취소하거나 1회의 개인연설회 기회를 박탈하는 벌칙조항을 두어야 하고, 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현실화해야 하며, ③ 여론조사의 발표와 현실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④ 선거기간중의 정당의 단합대회 등은 무소속 후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⑤ 공명선거를 위해서 민간단체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그 기관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발된 불법선거 사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절차를 거쳐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31~139면).
- **경향신문** 대통령후보의 인물됨이나 정치역량은 유권자가 이미 대중매체나

평소의 활동과 경력을 통해 널리 알려진 만큼 선거기간을 대폭 줄이고 운동 방식도 TV 등을 통해 정책대결로 유도하여야 한다(경향, 1992.3.30., 3면; 경향, 1992.12.22., 3면).

- **조선일보**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공동 정치지표 조사 14대 대통령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정부와 선관위의 단속여부에 대해서 '법대로 단속하고 있다'가 25.2%, '그렇지 못하다'는 61.6%, '무어라 얘기할 수 없다.'는 13.2% 였다. 또한 정부와 선관위의 위법사례 단속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86.6%였다(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6백 6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1992.11.12). (조선, 1992.11.16., 1면).
- **국민일보** 대규모 군중집회 위주의 선거운동관행은 TV 및 신문을 통한 후보자간 정책토론의 제도화를 통해 없애고 이 또한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이 자질·소신·정책대안 등을 비롯하여 '후보자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관위에 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국민, 1992.6.6., 3면; 국민, 1992.10.30., 3면).
- **서울신문** 사설 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는 ①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도록 하되, 시대의 발전에 맞춰 선거운동방법으로써 신문·TV 등의 원활한 활용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②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직접접촉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관련하여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법정기간 내 법정선거운동 이외에는 일체 불허하는 이른바 포괄적 제한규정을 통해 후보와 유권자간의 선의의 접촉도 차단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개선·보완되어야 한다(서울, 1992.3. 28., 2면; 서울, 1992.10.30., 2면).
- **한겨레신문** 해설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14조가 일부 정당에 의해 가장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특정조항이 문제점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 등 법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공표문제, 선거비용제한액 조항, 선거운동원의 수당문제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재개정이 필요하다(한겨레, 1992.12.16., 12면).
- **한국일보** 현행 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도입과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외의 선거운

동을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선거운동금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선거운동기간을 28일에서 20일로 단축해야 한다(한국, 1992.12.13., 23면; 한국, 1992.12.26., 1면; 한국, 1993.1. 11., 2면; 한국, 1993.1.11., 2면; 한국, 1992. 11.17., 1면).

5) 통합선거법 논의

- 이환의 (민자당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을 이해당사자인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주도하에 통합선거법으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국민, 1993.2.10., 4면).
- 이해찬 (민주당 국회의원) 향후 현행의 각종 선거를 정부원안대로 하면 각종 선거가 무질서하게 중복되어 '95년 지방의회단체장선거, '97년 대통령선거, '98년 지방의회단체장선거, 2002년 대통령·단체장·지방의회선거를 치르는 등 선거만 치르게 되어 있으므로 각급선거를 종합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국민, 1993.2.10., 4면).
- 윤 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든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선거체계의 통일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서울, 1993.2. 20., 1면).
- 임좌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절차가 각종선거법에서 대동소이하므로 국회의원선거법을 중심으로 단일선거법의 제정을 모색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1.7.25), 25~70면).
- 김봉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현행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관련 선거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선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선거법을 추진하면서 모호한 선거법규정을 보충해야 한다(서울, 1992.4.12., 5면; 서울, 1993.4.22., 2면).
- 박찬욱(서울대 교수) 법의 형평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의 각종 선거법을 통합화하여 단일화하는 통합선거법을 제정해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

의 개정방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1993.4.30), 29~33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각종 선거의 상호 불일치적인 주기순환으로 인하여 국정전반에 정기적인 국민의 총체적 심판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의사와 국정운영의 부조화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나 '통합선거법'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내각제라는 권력구조가 우리와는 판이한 국가(일본)에서 논의되었던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 적용할지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선거관계법제 이대론 곤란하다』, 월간 헌정(1993.3) 대한민국헌정회, 34면;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 28), 31~32면).
-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한 나라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자치단체장선거법이 각각 다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선거법」을 제정해야 한다(동아, 1993.4.14, 5면; 한국프레스센타 주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1993.4.12), 11~17면).

6) 기 타

① 여론조사공표

○ 대통령선거법

제65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이 그 명의를 밝혀 할 수 없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76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한다)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여론조사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임혁백(이화여대 교수) 여론조사결과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데 여론조사발표를 무조건 막으면 여론을 가장한 가짜 여론이

판을 치고 유언비어와 가짜 여론을 만들어 낸 사람이 득을 보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정치광고는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정보를 강요하게 되므로 정당의 여론조작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조사의 공표를 선거법에서 금지시켜서는 안되고, 후보자들의 토론의 광장을 개방하여야 한다(대북연구소주최 정책토론회 「대통령선거 이대로 좋은가」, 1992. 11.17; 조선, 1992.11.19, 10면).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대통령선거법 제65조 1항은 구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본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선거일 공고 이후에나 입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후보의 정견발표가 본격화하므로 여론조사도 이 기간중 실시·공표되어야 국민들의 알권리와 적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객관적 정보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개정법 조항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현이다(조선, 1992.11. 15, 2면;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헌법소원취지변경신청(1992.11.14)」).
- **조선일보 사설** ① 국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치 신빙도는 이미 13대 대통령 선거때에도 입증된 바 있으므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허용해야 하며, ② 자유토론을 거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52조와 35조 등의 내용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조선, 1992.12.21., 3면).

② 군부재자투표

○ 대통령선거법

제95조의3(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 부재자투표기관 중 계속하여 제95조의2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선박을 제외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사유·소재지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당해 개표구의 선거연락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9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 출장하여 행한다.

- 국민당 군부재자투표부정방지를 위해 거주지 관할 선관위가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선거일 8일전부터 선거전날까지 정당추천참관이과 선관위 직원의 직접 관리하에 투표를 실시하는 영외우편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경향, 1992.3.14.,1면; 세계, 1992.6. 19.,1면).
- 세계일보 해설 앞으로는 군부재자 투표의 경우, 최소한 투표참관인단의 참관을 필수화하거나 다소의 비용과 인원이 소요되더라도 전방의 필수근무요원 등을 제외한 후방부대 장병들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인근지역의 일반투표소에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세계, 1992.3. 26.,21면).
- 경향신문 군부재자의 경우 후방지역은 영내기표소보다 영외의 일반투표소에서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투표함의 수거나 운송 역시 지역선관위의 주관 아래 관할우체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내·함정·병원·교도소·요양소에 기표소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적 장치를 규정하여 더이상 부재자투표로 인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과감한 개선과 운영쇄신책이 마련되도록 전향적인 검토와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경향, 1992.3.30.,3면; 경향, 1992.12.22.,3면).

③ 기탁금제도

○ 대통령선거법

제26조(등록) ①후보자의 등록은 ……첨부하고, 후보자마다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 ①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1천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을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의원선거법

제36조(기탁금) ①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4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 박찬종(신정당 대표) 현행 대통령선거법상의 유효득표 비율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와 기탁금을 초과하는 방송연설비용 추징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침해이다(한겨레, 1992.12.20.,2면; 헌법소원 (1992. 12.29) 제출).
- 백기완(정치인) 대통령후보자마다 중앙선관위에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는 개정 대통령선거법 제26조 1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67조 4항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이다(한국, 1992.11.15.,1면; 한겨레, 1992.12.16.,12면).
- 정재황(홍익대 교수) 대통령선거법개정논의에서 현행 규정이 무소속 입후보와 정당추천후보간의 기탁금액수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소속 후보와 정당추천후보간의 차등 없이 2억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의 액수가 5천만원 · 1억원으로 과다한 고액이라는 점에도 위헌의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무소속후보와 정당후보간에 차별을 없애자는 점에서는 합헌적이나 고액인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개정주장은 합헌적이라고 보기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시연구(92.11), 241~242면).

④ 투개표관리

- 내무부 현행의 기표식 투표방식을 코인을 사용해 투표하는 기계식으로 바꿔 투표종료와 함께 집계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현재의 투·개표 관리 방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투표구 소형화 및 선거일을 법정화하고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수시로 변동사항을 첨삭하는 선거인명부제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동아, 1992.4.26.,15면; 중앙, 1992.6.12.,23면).
- 이목희(서울신문 정치부기자) 개표부정에 대한 대책으로 개표시간을 늘려 검표과정을 강화하고 개표종사원들의 피로를 덜어 우발적 실수를 막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정당참관인이나 선관위원들을 중원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투·개표과정이 전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므로 이번 대선부터라도 투·개표의 정확을 기해 민의를 1백% 반영키 위해서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의가 시급하다.(서울, 1992.7.22.,2면).

⑤ 선거연령 및 여성의 정치참여

○ 대통령선거법

제8조(선거권) 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8조(선거권) 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9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 조세형(신민당 의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표의 등 가성 확보와 선거공영제』,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69~72면).
- 전대협 신입생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의 40%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협행 선거법 규정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한겨례, 1992.11. 3., 12면).
- 박동서(서울대 교수) 협행 20세의 선거연령을 19세 내지 18세로 낮추어야 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분간 비례대표제나 Quata제를 활용해야 한다(『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6.23), 8~19면; 조선, 1992.11.19., 10면; 세계, 1992.3. 17., 12면; 조선, 1992.5.30. ,4면; 동아, 1992.5.30., 5면).
- 여성단체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패인분석에 따라 앞으로 정당·정파를 초월해 여성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여성계의 힘을 결집해 정치세력화하는 한편, 협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국민, 1992.4.14., 23면).

⑥ 장애자의 투표참여

○ 대통령선거법

제98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자신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 양 건(한양대 교수) 각종 장애인들에 대한 참정권보장이 미흡하므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게 관련법규를 보완해야 한다(국민, 1993.6.15.,4면; 조선 1993.6.16.,4면).

○ 김상연(한국맹인복지연합회 복지과장) 10월말 현재 30만명의 시각장애 유권자와 7만여명을 넘어선 정신장애 유권자는 지난 총선때까지 사실상 대리 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 헌법상의 비밀·직접투표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보조투표용구 사용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보다 완벽한 참정권의 보호를 위해서 외국처럼 별도의 접자투표용지가 교부되어야 한다(한국, 1992.11.13.,23면).

⑦ 기타의견

○ 박동서(서울대 교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단축하며,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개입을 재검토해야 하고,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거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면 그 당시에 참여한 정당들의 당리에 의해 선거법이 이루어지므로 국익과 선거법의 항구성을 위해서는 비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법의 개정작업을 추진시켜야 한다(『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6.23), 8~19면; 조선, 1992.11.19.,10면; 세계, 1992.3.17.,12면;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 서정갑(연세대 교수) 각 정당이 차별화 안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계층화가 뚜렷하지 않은 때문에 각 당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삼고 그외의 계층에는 사탕발림식 약속을 하는 셈이다. 각당의 무책임한 공약제시에 대해 언론이나 연구소 등이 각당이 집권해서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수치로 제시하고 수많은 공약의 우선 순위를 밝혀 계획을 제출케 하여 해서 이를 비교·발표

하는 방안도 있다(대륙연구소주최 정책토론회 『대통령선거 이대로 좋은가』, 1992.11.17; 조선, 1992.11.19, 10면).

- 양 건(한양대 교수)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도 정당추천을 허용해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1991.4.8), 12~13면).
-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정당공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고시계(92.2), 120~125면).
-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선거일자를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0~22면).
- 조성준(한국노총 홍보실장)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90년대 정치발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향』, 신민당 정책위원회 주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제47회 정책토론회(1991.7.20), 25~29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월부터 초·중·고교의 학생회장선거에 직원을 파견하여 선거절차 중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한편 투표하모가 기표대 등 실제선거에서 사요되는 장비도 대여해 주기로 하고 교과서에 공명선거를 계도하는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는 등 학생때부터 실질적인 선거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개표의 전산화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국민, 1993.1.19, 17면).
- 김봉규(선관위 사무총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에 관한 의식개혁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공명선거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공명선거 구현은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사명인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서울, 1993.4.12, 5면).
- 김호열(중앙선관위 지도2과장) 선거전이 금권·타락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국민의식에서 비롯된다.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의식개혁교육이 필요하다. 초·중·고교학생들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와 선관위의 대국민홍보확대가 그 방법이다(중아, 1992.1.31, 9면).

- 백영옥(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선거법은 정당간에 주고받기식으로 손질되어서는 안된다. 소선거제이든 중·대선거구제이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매력없는 자리가 아닌 한 과열타락은 계속될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적능단체들의 노력과 토론회가 자주 열려야 한다(국민, 1993.4.16, 4면; 동아, 1993.4.17, 4면; 경향, 1993.4.17, 4면; 세계, 1993.4.17, 5면).
- 동아일보 14대 총선거를 치르면서 서둘러 개정된 선거법의 많은 허점과 미비점이 혼탁한 선거분위기와 어우러져 우리의 정치문화를 낙후된 모습으로 타락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품살포·향응제공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의 통제 문제도 차제에 점검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점과 모순들을 내포한 선거법을 합리적·객관적·현실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도 고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 입장에 있는 선관위와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동아, 1992.8.30, 3면; 동아, 1992.11. 2, 3면).

2. 정당법 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1) 지구당 성립요건의 완화 및 지구당 존폐 문제

○ 현 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읍·면·동에 당연지소를 둘 수 있다.

제25조(법정지구당수) 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총수의 5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제26조(지구당의 분산)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중 5이상에 분산되어야 한다.

②정당이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지구당의 법정당원수) 지구당은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3.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자당 지구당의 경우, 현행법은 48개 이상의 지구당이 있어야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이 지구당을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으므로 법정지구당수를 줄이거나 현행법상의 지구당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서울 93.3.6,5면; 서울 93.3.9,5면; 국민 93. 3.6,4면).
- 김종호(민자당 정책위의장)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동아, 1992.4.11.,3면; 세계, 1993.4.11.,2면).
- 박상천(민주당의원) 지구당 폐지는 지방화·분권화라는 시대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지구당은 민의를 수렴하는 정당정치의 뿌리이다(중앙, 1993.8.23,4면).
- 김규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정당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

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수의 5분의 1(48개)이상의 지구당과 5개 시도 이상의 지구당 분산을 요하는 요건을 「15개 이상, 3개 시도 분산」으로 완화하여야 하고, 중앙당 소재지가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여야 한다(조선, 1993.5.16, 4면).

- 최한수(건국대 교수) 현재의 지구당을 폐지하여 선거구별 정당선거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야 하며, 후보자 선출시기를 전후하여 당적을 옮기는 자는 해당시 기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공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정당과 독립된 「공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국민, 1993.4.16., 4면;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 개혁』, 민자당 주최 「신한국 정치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1993.4.16.)」; 국민 93.4.16, 4면; 동아 93.4.17, 4면; 경향 93.4. 17, 4면; 세계 93.4.17, 5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어야 하나 광역자치단체에서나마 전국적인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자치단체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지방정당의 존재 및 이러한 정당의 지방자치 참여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지 않는 한 정당법상의 정당설립 및 존속유효조항은 복수정당제도·정당설립의 자유·정당평등 등에 관한 헌법원칙에 반하므로 개정해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생각(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1호(1992), 171~180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① 정당의 등록요건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여 정치참여의식이 고조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제도권 외 정치세력의 상존화현상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48개에서 그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② 등록취소규정의 경우, 국회의원 의석 1석 및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득표는 현정당정치문화의 구조화에서 만만치 않은 수치이므로 완화하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국민, 1993.6. 16., 4면; 『정당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1993.6.16.)」, 3~7면; 『정당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주최 「문민 정부와 법제개혁방향」 제35회 학술발표회(1993.3.20), 31면 · 34~36면).
- 김호진(고려대 교수) 현행의 지구당과 시·도지부의 상설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연락사무소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 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9~30면; 서울, 1993.5.8, 5면;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 정용대(건국대 강사) 현행법상 정당으로서 특권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일정수의 지구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정당설립 및 존속상의 조건규

정(정당법 3·25·26·38조)은 오히려 일정한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정당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8조 1항에서 선언한 복수정당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독일의 정당법처럼 보통선거에서 5%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설립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세계 1993.6.25,17면; 『한국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정당연구회 주최 「제1회 정당연구회 학술세미나(1993.6.23)」).

- **한기찬(변호사)** 국회의원들의 정치비용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설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때에만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가동해야 한다(서울, 1993.5.8,5면;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2) 당내질서의 민주화와 공천제도의 개선

○ 정당법

제29조(정당의 기구) ①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1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①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은 소속당원중에서 선거구별로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2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①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정당은 소속 당원중에서 선거구별로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박준규(국회의장)** 현행 정당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관행적으로 당지도부에 의해 낙점되어 왔던 공천과정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② 당직의 결정에 있어서도 경선에 의하여야 하며, ③ 입후보자의 자격을 지구당원이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④ 여야의 대립방지를 위해 국회의장·부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원내총무)로 구성되는 국회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중앙, 1992.7.14,2면).

- **김규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낙하산 공천을 막기 위해 정당의 공

직선서 후보추천때 선거구 당원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조선, 1993.5.16.,4면).

- 김광웅(서울대 교수)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하향식 공천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14~16면).
- 박동서(서울대 교수) 공천제의 경우, 피선거권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되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중앙당에 의한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대통령 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6.23)』, 8~19면; 조선, 1992.11.19., 10면; 세계, 1992.3.17.,12면;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 김호진(고려대 교수) 당대표·원내총무·지구당위원장 등의 당 간부직을 자유경선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서울, 1993.5.8.,5면; 대한민국현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 양 건(한양대 교수) 정당명부의 작성과정에서 후보자선정을 위한 당내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면서 후보자순위에 관해서는 고정 명부식을 택하며, 유권자의 직접관여는 당분간 유보하도록 한다(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주최 「각종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1991.7.25), 143~149면; 조선 1992.5.30.,4면; 동아, 1992.5.30.,5면; 한국 1992.11.13.,23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당내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당내민주주의의 무규율적 태도를 지양해야 하므로 독일의 정당법 17조와 연방선거법 22조와 마찬가지로 정당내부의 민주적 질서유지절차를 법규차원에서 보장함이 당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의 정당법보다 정당내부질서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사후구제적 차원에서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방안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후보의 추천·결정기구로서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정당법에 의무화하여야 한다(『정당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주최 「문민정부와 법제개혁방향」 제35회 학술발표회(1993.3.20), 31면·34~36면; 『정당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1993.6.16)』, 3~7면).
- 이남영(숙명여대 교수) 하급당원이 당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사항의 결정시기는 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국민,

1993.6.16., 4면; 이남영, 『정당법개선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1993.6.16)」, 1~2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지역구에서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하려는 입후보자 및 지구당위원장의 선정은 지구당 당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당 총재나 대통령후보는 지구당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의 대회 내지 전당대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후보추천 및 당총재·지구당위원장 등 당직자선정을 당비를 내는 당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당법에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1호(1992), 171~180면).

3) 정당운영과 정치비용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3. 정당에 관한 사무

○ 정당법

제33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민자당** 정당운영비의 경우, 각 정당의 이념 및 정강정책에 찬동하는 당원들의 자립적 당비로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서울 93.3.6.5면; 서울 93.3.9.5면; 국민 93.3.6.4면).
- **조홍규(민주당 국회의원)** 엄청난 조직관리비용이 드는 지구당을 창설하지 말고 중앙당과 시지부를 중심으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중앙당도 사무처요원을 확대하지 말고 무료봉사활동에 의지해야 한다(서울, 1993.3.6.4면).
- **김운용(성균관대 교수)** 정당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①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정착시켜야 하고, ②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단순히 선거비용의 보조수준이 아니라 정당의 운영비까지도 상당부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28~29면).

- 김호진(고려대 교수) 당내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정당운영비를 축소하며, 모든 국민에게 정당가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 세미나(1993.4.28), 29면; 서울, 1993.5.8,5면;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 최대권(서울대 교수)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당지도부, 특히 당총재가 제공하는 금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벗어나야 하고, 정당은 당비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조직이어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1호(1992), 171~180면).
- 김관봉(경희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정치자금조달방법으로서는 미국의 기부금제도·독일의 국고지원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제 등이 다양하게 수용되어 있으나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들의 회계에 대한 공개 및 감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데,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예처럼 이에 대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세계, 1993.3.9.,9면).

4) 정당가입제한

○ 정당법

제17조(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당법시행령

제3조(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등) 정당법 제1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및 언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단서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법 제75조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제1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김규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언론인·교원의 정당가입불가의 원칙을 완화하여 언론인에 대하여는 완전히 허용하고, 교원에 대하여는 고교 이상 재직교원으로 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조선, 1993. 5.16., 4면).
- 김광웅(서울대 교수) 정당가입의 자유와 관련하여 현행 정당법은 공무원·교원·언론인 등에 대하여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규정(제17조 단서)을 두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탈퇴의 자유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정치선헌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14~16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공무원·교원·언론인에게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자격을 제한하는 정당법규정은 헌법 제8조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많으므로 선거관리 담당부서 공무원은 전반적인 정치활동제한을,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원자격제한을, 교원공무원과 언론인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동안만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국민, 1993. 6.16., 4면; 『정당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1993.6.16)』, 3~7면).
- 이남영(숙명여대 교수) 정당가입제한을 완화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정당가입제한을 법률로 하고, 그 범위를 완전히 개방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며, 정당원의 자격을 당비납부실적이 2년이상 있는 자로 한정하여야 하고, 교육공무원·언론인 등의 정당가입도 허용하여야 한다(국민, 1993.6.16., 4면; 『정당법개선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1993.6.16)』, 1~2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정당법상의 당원자격제한조항은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정당가입 탈퇴의 자유에 반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1호(1992), 171~180면).

5) 기타

- 김광웅(서울대 교수) 정당의 정책정당화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각 정당들이 독일처럼 산하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하든지 대학의 도움을 받아 연구의 깊이를 더하도록 해야 한다(『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14~16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 및 역할의 재조정을 위해서는 정당등록·취소·해산 및 선관위보고사항 위주의 현행 정당법구조를 보다 다양화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당비면세등의 규정을 도입하여야 하며, 정당과 의회간의 일체감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제29조 의원총회의 조직 및 권한규정에 최소한 당간부의 경우 의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운영의 합의체로서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것에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현행법상 '야당'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독일의 함부르크주 헌법의 경우(야당을 헌법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규정)와 태국·스웨덴 헌법의 경우(야당의 당수에 대해 의회의 수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규정)처럼 야당의 현실적 정치역할을 감안하여 야당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여야 한다(국민, 1993.6.16., 4면; 『정당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 특위 주최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1993.6.16)」, 3~7면;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31면).
- 지병문(전남대 교수) 시·군·구의원의 경우에 사실상 대부분 정당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예산 및 주택증심지의 재개발 등에 관하여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므로 현행법상 시·군·구의원 선거에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시·군·구의원의 정당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국민, 1993.6.17., 4면;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지방자치법에 관한 토론회(1993.6.17)」, 9~24면).

3. 정치자금에 관한 입법 의견

1) 후원회 · 기탁금 · 기부제 등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법인, 후원회 기타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5.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6.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같다)이나 시.도지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임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지구당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참고자료】 4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최근개정내용을 참조할 것.

- 민자당 후원회의 회원수와 모금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현실화하여야 하고, 소액기부금제의 활성화를 강구해야 한다 (세계, 1993.1.27.,1면; 경향, 1993.3.6.,1면; 한국, 1993. 3.6.,1면; 한겨례, 1993. 3.6.,1면; 세계, 1993.3.6.,1면; 서울, 1993.3.6.,1면).
- 민주당 현행 지정기탁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여 비지정기탁금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행 후원회제도를 소액다수주의로 전환함과 아울러 기부금증서제(일명 쿠폰제)를 현행 정치자금법에 도입하여야 한다(한국, 1993.3.6.,2면; 조선, 1993.4.9.,4면).
- 김대중(민주당 공동대표) 정치자금법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현재 여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비지정기탁금으로 조성하여 정치자금의 배분법에 따라 분배하도록 해야 하며, ② 소액기탁의 가능성 및 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 기탁금액에 대하여 면세의 혜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쿠폰제를 도입해야 한다(한국, 1992.9.

7.3면).

- 박상천(민주당 의원) 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여야 한다(조선, 1993.5.11.,4면; 민주당 주최 「깨끗한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1993.5.10)).
- 국민당 현행법상의 지정기탁금제·후원회의 회원수제한규정 및 납입한도 규정을 폐지해야 하고, 후원회 회원의 의명성 보장을 추진함과 아울러 무기명성금제(쿠폰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후원회의 금품모집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해야 한다(한겨례, 1992.9. 30.,2면).
- 김규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기탁금제와 후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조선, 1993.5.16.,4면; 세계, 1993.6.28.,8면).
- 박찬욱(서울대 교수) 현행 지정 기탁금제도를 보완하여 정치자금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기탁금의 30%정도를 지정되지 않은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행 후원회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명으로 되어 있는 후원회 회원수의 상한선은 폐지하되 회원의 납입과 후원회의 기부에 있어서의 상한선은 현실적으로 높혀서 존치시켜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1993.4.30), 29~33면).
- 송 복(연세대 교수) 기탁금중 지정기탁금제는 존속시키되 지정기탁금을 내는 사람이 그중 20%정도를 의무적으로 비지정기탁금화하는 등 비지정기탁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고, 후원금의 규모는 법으로 정해져 신축성을 부여하여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해로 이월시켜 3년동안의 것으로 연간기부한도액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의 비치·보존 및 회계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정치자금: 그 문제점과 처방···왜, 무엇이, 언제나 문제인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2), 234~239면).
- 박동서(서울대 교수)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를 야당에게도 일정부분 배분될 수 있도록 공영화해야 하는데, 그 공영화비율은 30%로 하되 공영화된

부분 30%는 비지정된 정당에 배분하면서 그 비율을 국가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르도록 하여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의 비율로 배분하여야 하고, 정당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쿠폰을 이용하여 기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6. 23)」, 15~16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비자금조성·사용 등에 따르는 각종의 비리를 막고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인의 후원금기부를 금지해야 하며, 후원회 회원수의 제한도 철폐해야 하고, 법인의 기탁금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금지하여야 하며,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노동법조항을 폐지하며,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는 단체에 노동조합을 포함시켜야 한다(『정치 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2호(1992), 96~107면; 국민, 1993.6.22., 4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방향에 관한 몇가지 생각』,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치자금법에 관한 토론회(1993.6.22)」, 1~3면).
- **김호진(고려대 교수)** 현행 지정기탁금제는 정치자금의 대부분이 여당에 몰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서울, 1993.5.8., 5면; 대한민국현 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 **김영래(아주대 교수)**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다수주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후원회 회원수를 상향조정하고,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에게도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해야 하며, 비지정기탁제를 확대하여 정치자금을 균등화하여야 한다(국민, 1993.6.22., 4면;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치자금법에 관한 토론회(1993.6.22)」, 5~14면;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 의회정치연구소 주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1993.4.21), 34~37면).
- **최한수(건국대 교수)** 정당후원회제도와 정치자금지정기탁제를 여야당이 평등하게 지원받도록 하고,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사후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반 유권자에게 편법적으로 금품제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당원 단합대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국민, 1993.4.16., 4면;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 개혁』, 민자당 주최 「신한국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공청회(1993.4.16)」; 국민 93.4.16., 4면; 동아 93.4.17., 4면; 경향

93.4.17.,4면; 세계 93.4.17.,5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고 거액기부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기부의 하한선을 철폐해야 하고, 정치자금기부 및 후원회 가입에의 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노조 등 기타 단체가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처럼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정당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주최 「문민정부와 법제개혁방향」 제35회 학술발표회(1993.3.20), 33~34면).
-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현행 지정기탁금제 보다는 후원회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후원회의 회원수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하여 소액다수주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조선, 1993.5.11.,4면; 민주당 주최 「깨끗한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1993.5.10)).
- 서경석(경실련 사무총장) 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과 같이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국민, 1992.6.6.,4면).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는 여당에게만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야당에게도 일정부분 배분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공영화해야 하는데, 그 공영화의 비율은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30%정도를 해야 하며, 공영화된 30%는 지정된 정당이외의 정당에 배분하되 배분비율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야 하며, 정치자금의 건전한 조달을 위하여 쿠폰제 등 익명성 보장장치를 일정기간 도입하여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쿠폰을 발행함과 아울러 독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92년도 하반기<공선협> 활동보고서, 『국회 정치자금법개정에 관한 공선협의 입장』 성명서(1992.8.14), 1993, 54면).
- 동아일보 정치자금의 공개성·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상의 정치자금기탁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며 감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동아, 1992.8.15.,3면; 동아, 1992.10.31.,3면).

2) 국고보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① 확대 의견

- 신상식 (민자당 국회의원)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당의 원활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한도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경향, 1992.8.18., 17면).
- 민주당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시켜야 한다(한국, 1993.3.6., 2면; 조선, 1993.4.9., 4면).
- 송 복(연세대 교수) 유권자 1인당 400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을 1인당 8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② 국고보조금의 정당 간 배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정치자금: 그 문제점과 처방… 왜, 무엇이, 언제나 문제인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창간호(1992), 234~239면).
-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 정치자금의 비공개적·음성적 조달, 정부보조금의 여야 불균형 등으로 금권정치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사당화 현상을 가져오며 당내 민주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자본주의체제의 윤리적·도덕적 기반을 침식하고 있으므로 선거공영제 및 선거법의 개정도 중요하나 그 보다도 정치자금의 국고보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국민, 1992.6.6., 4면).
- 동아일보 대통령선거비용의 경우,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동아, 1992.8. 15., 3면; 동아, 1992.10.31., 3면).

② 축소 의견

- 박찬욱(서울대 교수) 고보조금의 증액은 억제하되 방송을 통한 정견발표, 정견·정책집과 소형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에 드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

(1993.4.30), 29~33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당운영의 국고보조금제도는 그것이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성격에 반하고 헌법상의 평등(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까닭에 폐지하여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2호(1992), 96~107면).
-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국민이 정당활동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비제도를 활용해야지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조선, 1993.5.11., 4면; 민주당 주최 「깨끗한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1993.5.10)).

③ 기타의견

- **김영진(민자당 의원)** 정당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당비나 소액 후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므로 정당운영비의 국고보조제는 존치되어야 하고, 후원금 수입·지출의 회계 및 후원회원 명부의 공개는 현상황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경향, 1993.6.22., 4면;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치자금법에 관한 토론회(1993.6.22.)」).
- **박동서(서울대 교수)**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현행 각 정당의 의석수 및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에 대통령선거에서의 득표율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법 및 선관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1992.6.23)」, 15~16면).
- **박상철(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치자금의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히 득표율에 따른 국고보조금배분율을 채택하든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아울러 정치체계의 탈권위주의화·당내민주화·선거공영제의 확립·금융실명제의 실시 등과 같이 외적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정당관계법제의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주최 「문민정부와 법제개혁방향」 제35회 학술발표회(1993.3.20), 33~34면).
- **김영래(아주대 교수)**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에게도 지정기탁을 허용하며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고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 선거의 공영제를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의 확대 및 지급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공영화하며, 정당운영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당비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국민, 1993.6.22., 4면;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치자금법에 관한 토론회(1993.6.22)」, 5~14면;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 의회정치연구소 주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1993.4.21), 34~37면).

- **한기찬(변호사)**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지원금은 중액시키되 그 배분방법은 교섭단체별로 균등하게 30%를, 의석비율에 따라 30%를, 나머지 30%는 원외정당과 소수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민주당 주최 「깨끗한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1993.5.10); 대한민국 헌정회 주최 「정치개혁 토론회(1993.5.7)」; 조선, 1993.5.11., 4면; 서울, 1993. 5.8., 5면).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선거공영제를 강화할 목적이 정치자금의 국고부담을 인상하여 이를 각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정당의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만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국고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를 바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이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의 의석수 및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선거의 득표율도 반영하게 하여 정치자금의 배분에 국민의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92년도 하반기<공선 협> 활동보고서, 『국회 정치자금법개정에 관한 공선협의 입장』 성명서(1992.8.14), 1993, 54면).

3) 당 비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원·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 **박찬욱(서울대 교수)** 각 정당은 당운영비의 감축을 위해 유급당원의 수를 축소하는 등 중앙당 운영과 지구당 관리의 경비를 절감하여야 하고, 당

비가 그 정당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도록 하면서 특별당비는 상한선을 정해 규정하여야 한다(『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 제31회 의정연구논단 발표회(1993.4.30), 29~33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당비가 당재정의 중요한 당재원이 되도록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아울러 당비납부를 의무화하여야 한다(『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I)』,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2호(1992), 96~107면).
- **세계일보 사설** 정당의 조직을 감축하면서 정당의 운영자금은 당원들의 당비와 후원회의 후원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세계, 1993.3.6., 3면).

4) 기타

- **국민당** 법에서 인정하는 정치자금 이외의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여야 한다(한겨레, 1992.9.30., 2면).
- **김진영 (무소속 국회의원)** 의원들도 후원회를 통한 '깨끗한 돈'만 쓰기 위해서는 지역구민에 대한 경조사 참석, 주례 등을 못하도록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서울, 1993.3.6., 4면).
- **김규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정치자금 공개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정치자금의 수지에 대해 3년간 공람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이 자금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야 한다(조선, 1993.5.16., 4면; 세계, 1993.6.28., 8면).
- **김석준(이화여대 교수)** 공명선거와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설명제·토지공개념·새로운 정치자금 기탁제도 및 이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는 조세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선거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공명선거와 선거비용』, 국회사무처 「국회보」(1992.2), 78면).
- **김해동 (서울대 교수)** 일정기간 국가에서 정치비용을 부담하다가 점진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 및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회기적 공영

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서울, 1993.3.7., 5면).

- 김광웅(서울대 교수) ① 법정선거비용을 현실화하고, 그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② 정치비용의 지출명세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쳐 중앙선관위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광웅,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정당 및 선거관련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제4회 법제세미나(1993.4.28), 18~19면; 세계, 1993.4.29, 3면)
- 최대권(서울대 교수) 감사원법의 정신에 따라 정당은 국고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비용한도액 제도는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면서 모든 선거운동은 전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면적인 선거공영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정당후원회 입후보자의 일체의 비용·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보고·공개하면서 후원회 회원명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국민, 1993.6.22, 4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관한 몇 가지 생각』,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치자금법에 관한 토론회(1993.6.22)」, 1~3면).
- 김영래(아주대 교수)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개화이므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후원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정치자금기부자의 성명·주소·직업·기부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보고함으로써 일반의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개요를 관보나 보도매체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아울러 명세와 결산내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첨부를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하고, 정치자금의 보고서·내역·진위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야 하고, 아울러 대선거구제도로의 전환과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전국구제도와 지구당조직의 개선을 통하여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국민, 1993.6.22, 4면; 김영래,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주최 「정치자금법에 관한 토론회(1993.6.22)」, 5~14면;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 의회정치연구소 주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1993.4.21), 34~37면).
- 홍성진(한국노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위나 광역선거에 있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의 공개화와 깨끗한 선거를 유도하여야 한다(홍성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노조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1991.4.8), 11면).

-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 최근의 재산공개로 지도층 인사들의 총체적 타락상이 드러났으나 이 또한 금융실명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재테크' 부분은 누락되었다. 이를 정치개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조항도 폐지하는 등 세제개혁도 필요하다. 직위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이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얻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민주당주최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한 공청회』, 1993.3.29). (한겨례, 1993.3.30, 5면)
- 세계일보 사설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유급선거운동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선진국의 예처럼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이 되도록 제도를 전환하여야 한다(세계, 1993.3.6, 3면).
- 서울신문 해설 정치자금모금협회를 양성화하고 당비모금 및 정당출판사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법 개정방향이다. (서울, 1993.4.2, 4면)

III. 외국의 입법례와 입법 방향

1. 외국의 입법례

각국의 정치제도는 나라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중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한 바람직한 모범이 되고 있는 국가는 대략 미국·독일·영국 등으로 이들은 정치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특히 돈 안드는 정치풍토의 구현을 위한 대안으로 요즈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정당운영과 선거비용의 조달에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선거전 1년여를 제외하고는 평상시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등 당선자 중심의 정당체계로서 비상설식의 지구당운영과 소수정예화된 중앙당요원의 운영행태 등은 매우 시사적인 것이다. 정치자금의 출처와 수지 공개의 엄격성과 선거비용의 모금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의 통로가 되고 있는 후원회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또한 과거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성으로 인한 '1인 1표'라는 민주적 정치 참여의 실질적 침해와 유급선거운동원의 과행적 운영으로 부정과 불법행위가 만연한 우리의 정치풍토에 많은 귀감이 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이의 지양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깨끗한 선거풍토구현을 위하여 각종 부정·타락선거운동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사처벌 내지 피선거권의 박탈 등을 통한 엄벌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경우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해지는데, 1883년에 제정된 영국의 「부패및위법행위방지법(Corrupt and Illegal Practice Prevention Act)」은 적절한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특징은 후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부패행위의 죄가 범해지더라도 해당후보자의 피선거권을 7년간 박탈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시 5년간 공민권을 박탈하며 선거소송에 있어서 신속, 또한 실효적으로 재판제도를 개선하여 선거소송의 원고를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의 책무로 하고 2인의 판사가 심리하여 그 결과가 하원에 보고되면 소송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이다.⁵⁾ 선거에 있어서 부정한 일체의 행위를 중벌함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국

5) 영국의 「부패및위법행위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동법의 전문은 박영도, 『영국의 선거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제』(한국법제연구원, 1993)에 자세히 소개·수록되어 있다.

의 「부패및위법행위방지법」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동서독의 통합을 완수한 독일은 그 법제의 합리성과 정합성에 힘입은 바 큰데 정치관계법의 정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를 들어 독일 정당법의 제17조 ‘…… 후보자추천은 비밀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추천은 선거법 또는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과 독일 선거법 제22조 ‘…… 정당입후보자의 선출은 소선거구내의 선거권 있는 당원대회나 그들의 당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은 공직후보자의 추천이 당지도부의 지명행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정당의 하부조직, 즉 지구당이 사조직화되는 것을 법규차원에서 방지하게 한다. 우리의 경우 정당법 제29·31조에서 공직 선거후보자의 추천을 비롯한 정당의 내부적 질서에 관하여 당헌에 완전히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당내문제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사후 구제적 차원에 소홀할 수 밖에 없게 한다. 또한 불평등한 선거구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은 연방선거법 제3조(선거구위원회와 선거구의 분할)⁶⁾에서 선거구간의 선거인수의 편차허용범위를 법규의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각 선거구인구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거구 주민의 선거권의 가치가 저락되는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정치문제(potitical question)라는 사법심사대상의 한계로 받아들여져 지역선거구간의 인구불평등 문제가 재판상의 쟁송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오히려 각 정당간의 타협에 의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6) 독일연방선거법 제3조(선거구위원회와 선거구의 분할)

.....

(2) 선거구위원회는 선거구구역의 인구수 변동을 보고하고, 선거구분할의 변경이 필요 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변경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할 임무를 띤다. 이 위원회는 그 보고서에서 다른 근거에 따라서도 선거구분할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선거구분 할을 제안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주의 경계는 지켜져야 한다.
2.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100분의 25를 상회하거나 하회하여서는 안된다. 특정선거구인구수와 평균선거구인구수의 격차는 100분의 33 과 1/3을 초과할 때에는 새로운 구획이 행해져야 한다.
3. 각 주의 선거구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는 숫자와 가능한 한 최대한 부합되어야 한다.
4. 선거구는 전체가 하나의 관련된 지역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읍·면(Gemeinde)·군(Kreis)·시(Kreisfreien Städten)의 경계는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한다.

인구수를 조사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의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정치선진국의 입법례는 그 일부분의 소개에 지나지 않지만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많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각국의 정치제도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지나치게 인물중심의 정치로 전락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 증대로 공공성에 대한 많은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고, 독일과 영국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에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정치문화나 현정상 권력구조가 판이한 점, 즉 서구적 민주주의의 정착, 연방제·의원내각제 등으로 인하여 여과과정 없는 제도의 수용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의 입법추진현황과 입법방향

1992년 8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된 경색정국을 타결하기 위하여 당시 여·야 대표들은 국회에 「당면한 정치문제 타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92년 9월 28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3년 2월 임시국회 이후 이 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수차례에 걸친 여·야 간의 의견조정과 공청회개최 등을 통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각계의 의견제출 및 여론조성이 활발하여졌다. 이와 함께 각 당과 사회단체의 정책토론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안과 입법의견은 정치관계법의 쟁점과 그 개선의 주요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정치관계법의 개혁속도는 더욱 빨라지기 시작하였고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8월 14일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8월 23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러 정치개혁의 제도화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는 엄연한 현실로써 각 정당간의 이해타산의 논리가 그 개혁의 향방에 어떠한 부담을 줄지는 속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국의 예처럼 상설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요즘 여·야 모두 「금융실명제 이후 지구당은 권력기반의 유효한 유일의 수단이다」, 「지구당의 폐지는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반한다」 등의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야의원들이 지

구당운영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의 상실이라는 현실앞에서 주저하는 셈이다. 또한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제도의 활성화 및 강화에 대하여서도 그 명분과 논리에 있어서는 수긍하게 되지만 야당의원의 경우 민자당의 120여개에 비해 19개에 불과한 후원회 숫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득권 유지적인 자세와 현실론의 논리를 뛰어넘어야만 소위 '신정치개혁'이 가능해지고 정치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지만 제도개선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점도 우리의 정치환경 중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정치관계법의 개정 및 개혁대상은 크게 대표제형식 및 선거구획 정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방법 및 선거공영제, 그리고 정치비용의 절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당제도의 개선과 국회운영의 합리화는 불가피하게 된다. 정치관계법의 입법방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일례를 들어, 정치를 위한 소요비용, 즉 정치비용의 수요측면에서 정치관계법의 주요입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비용은 크게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정당 및 정치조직의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 입법활동을 위한 의정비용 등 세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선거비용의 경우 본 보고서의 입법의견에서도 빈번하게 제시되었지만 결국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최선이 될 듯하다. 그 비용이 결국 국민에게로 전가되지만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에게로 되돌아가고 선거운동이나 선거풍토의 개선을 위해서라면 조금더 그 부담이 가중 되더라도 국가발전 및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공명정대하고 경제적일 것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실시될 경우 당연히 선거운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집행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며 이는 선거풍토는 물론 정치발전에까지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관리비용, 즉 정당 및 정치조직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가급적 조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에 의존하여 최소한으로 절감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정치인의 자정노력과 솔선수범이 요망되며 아울러 국민의 가치관도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비대한 정당조직의 지향과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법규차원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당법이 정당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나치게 당현에 일임하는 설정이어서 아예 정당법의 법규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개선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비용의 증대방안으로서 국회의 예산증액으로 의원들의 보다 효과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될 경우 의회정치의 활성화 이외에도 선거비용과 관리비용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정치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국가예산차원에서 소요되는 돈은 결코 음성화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의 투명성확보라는 또 다른 효과가 수반된다. 1993년 국회예산이 약 1천 150억여원인데 반하여 정부예산은 38조를 상회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상의 수치만을 비교하여도 의회가 효과적으로 국정감시·비판 및 입법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큰 무리이다. 이에 의정비용을 국가예산의 차원에서 증액하여 의원들의 입법활동사업비 증가와 보좌관 및 비서관의 증원 및 신분보장을 기할 경우 정치비용의 큰 부분을 담당해줌으로써 깨끗한 정치풍토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관계법의 개선과 그 입법방향은 여러가지 측면과 발상에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그것은 종국에는 정치관계법의 체계적인 개선과 정비에 반영될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실명제 실시와 정치환경의 새로운 변화속에서 정치관계법제는 그 개혁을 위한 천재일우의 호기를 맞이하였다. 잘못된 풍토는 좋은 제도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정치문화의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전향적인 개혁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진단과 개선작업에 모든 입법관계자들은 이해득실의 차원에서 벗어나 상호협조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치관계법제의 연혁¹⁾

1. 대통령선거법

○ 대통령·부통령선거법(제247호, 1952.7.18) : (신규제정)

종래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토록 되어 있었는바, 1952.7.7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만 21세이상의 자는 선거권을, 만 40세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을 인정함.
- ②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특별시의 구·시·군을 개표구로 함.
- ③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참의원의장이 위촉토록 함.
- ④ 각급선거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도록 함.
- ⑤ 선거비용에 관하여는 중앙선거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거실시상 징수에 없도록 국고에서 지급토록 함.
- ⑥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당선을 실한 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된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당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법(제1262호, 1963.2.1) : (폐지제정)

법률 제247호로 공포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소위 빌체개정안이 통과된 복잡한 정국하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1952년 7월 18일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써 미비점이 허다하였으나 개정함이 없이 시행되어 왔던 바 4·19 이후 1960년 6월 15일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선출방식이 간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은 사실상 정지되어 왔고 새로 개정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법은 폐지하고 새로 개정된 헌법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도를 확립하고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명선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 ① 대통령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후보자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②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정당연설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법(제1384호, 1963.8.6) : (일부개정)

현행 대통령선거법에는 대통령선거후의 정국의 안정에 지장이 있으며 선거운동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가하는 규정이 들어 있는 외에 자격조건·벌칙등에 균형을 잃은 점이 있을 뿐아니라 법해석상 또는 법운용상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① 종래 선거권자의 연령산정을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선거일을 기준으로 함.

* 한국법제연구원편, 법률연혁목록(1992)을 참조함.

- 대통령선거법중개정법률(제1848호, 1966.12.14) : (일부개정)

국외체류중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구제하여 우편으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에 관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선거의 민주화를 기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법중개정법률(제2087호, 1969.1.23) : (일부개정)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일부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완화함과 동시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보강하려는 것임.

 - ①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법중개정법률(제2240호, 1970.12.22) : (일부개정)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과 그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거에 이용될 요소를 규제하여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① 종래에는 선거법상의 인구의 기준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었던 것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법(제3331호, 1980.12.31) : (신규제정)

새로운 대통령선거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선거인의 선거 및 대통령선거의 관리와 이에 따른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 ② 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합동연설회의 방법으로 하고 그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등 엄격한 선거공영제를 마련함.
 - ③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신문광고·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연설원의 방송시설이용등·매스콤을 통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등 엄격한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비용의 절감과 국력낭비방지등 간선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
- 대통령선거법중개정법률(제3355호, 1981.1.24) : (일부개정)

대통령선거인후보자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인수를 완화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선거인후보자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수 “200인이상 300인이하”를 “100인이상 150인이하”로, 인구 5,000미만 선거구에서의 “100인이상 150인이하”를 “50인이상 70인이하”로 하향조정함.
- 대통령선거법(제3937호, 1987.11.7) : (폐지제정)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개정헌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 도가 채택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정한 선거의 관리와 그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① 대통령의 선거권자를 20세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자를 국회의원

의 피선거권이 있고 대통령선거일 현재 4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

- ②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후보자 1인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5천만원을 기탁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는 서울 특별시·직할시·도중 5이상에서 선거권자 5천인이상 7천인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고 1억원을 기탁하도록 함.
- ③ 선거비용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인 자로 함.

○ 대통령선거법중개정법률(제4495호, 1992.11.11) : (일부개정)

불법타락과열 및 관권개입선거의 방지를 위하여 연설회장의 소란행위나 가두방송을 금지하고 해임된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의 선거일 6월 내 복직을 금하였으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를 강화하고 참관인의 의무나태죄,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등의 신설 등 전반적으로 벌칙을 상향조정 하였고 선거인명부작성의 엄격화·언론기관의 공정보보도의무의 신설 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방송시설을 통한 연설·방송광고 등에서의 국고보조의 확대, 정견 및 정책집 발행인쇄물의 배부 허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의 제작 등 선거활동 및 선거관리의 합리화를 꾀함.

2. 국회의원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 1947.3.17) : (신규제정)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175호, 1950.4.12) : (일부개정)

과거시대의 선거법령을 새 국가이념에 입각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선거의 공정성을 유지·육성하여 선거의 명랑화를 기하고 선거비용을 최소로 축소시키며 선거지반이 없는 월남동포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1인 1선거구제도를 채택함.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204호, 1951.6.2) : (일부개정)

○ 민의원의원선거법(제470호, 1958.1.25) : (폐지제정)

1952·7·7 헌법개정으로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게 됨에 따라 민의원의 원의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① 선거권은 만21세, 피선거권은 만25세이상의 자에게 부여함.
- ② 선거구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되 인구 15만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마다 1선거구를 증설함.
- ③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50만원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6분의 1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 민의원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475호, 1958.3.11) :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제551호, 1960.6.23) : (폐지제정)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제정하려는 것임.
①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605호, 1961.4.28) :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606호, 1961.4.28) :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제1256호, 1963.1.16) : (폐지제정)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4·19의거이후 1960년 6월 23일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양원제의 국회구성과 내각책임제의 권력구조를 전제로 하였고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이 아니고 후보자본위였으므로 후보자 난립의 폐를 막을 길이 없었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유되었으며 지역·혈연등의 정실에 좌우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개정헌법과 8.12성명의 취지에 따라 정국의 안정을 얻고 지역·혈연의 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선거구에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에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고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추천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선거관리의 공정과 선거비용의 경감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체를 철저히 하고 선거운동원을 전폐하고 주로 연설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새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 선거구는 전국선거구와 지역선거구로 구분함.
② 1지역구에서는 1인의 의원을 선거함.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1363호, 1963.8.6) :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1849호, 1966.12.14) :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2088호, 1969.1.23) :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제2241호, 1970.12.22) : (일부개정)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타락선거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인구의 기준을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도록 함.
② 국회의원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도 그 직에 있으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③ 교육공무원도 개표사무종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표사무종사원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수는 당해 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④ 전국구의석의 배경을 받을 정당의 자격으로서의 지역구의석수를 3석에서 5석으로 함.
- 국회의원선거법(제2404호, 1972.12.30) : (폐지제정)

유신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종래와 같은 선거의 과열화와 타락상을 일소하고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①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정당이 해산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당원 아닌 자의 자유로운 입후보가 보장되게 하고, 후보 자등록은 후보자 자신이 하도록 하며, 당원인 의원도 당적의 자유스러운 이탈·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② 종래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당 1인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선거구를 새로 조정하여 선거구당 2인의 의원을 선출하게 함.
 -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의원선거제를 신설함.
 - ④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제를 채택하고 낙선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 국회의원선거법증개정법률(제2603호, 1973.3.12) : (일부개정)
- 국회의원선거법증개정법률(제3093호, 1977.12.31) : (일부개정)
 - ① 국회의원의 정원을 219인에서 231인으로 증원함.
 - ②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참관인제도를 신설함.
 - ③ 기탁금을 인상함.
 - ④ 선거사무원의 교체금지조항을 배제함.
 - ⑤ 정당추천투표참관인제도를 신설함.

○ 국회의원선거법(제3359호, 1981.1.29) : (폐지제정)

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제의 도입등 새로운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지역구 및 전국구선거의 관리와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정선거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①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의 2종으로 하고, 1지역구의 의원정수를 2인으로 하며, 전국구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2분의 1로 함.
 - ② 지역구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의 추천장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이하의 추천장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전국구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이 후보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 ③ 전국구의석은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배분하되, 지역구선거에서 의석수가 제1위인 정당에 전국구의원정수의 3분의 2를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이하의 정당에 그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법증개정법률(제3731호, 1984.7.25) : (일부개정)

선거인명부, 의원후보자, 선거운동, 투·개표참관등에 관한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구역개편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① 전국구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와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제4003호, 1988.3.17) : (전문개정)

- ① 종전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총224개 지역구에서 224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제4462호, 1991.12.31) : (일부개정)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공명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정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비현실적 규제는 이를 완화하며,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의원정수(299인)의 범위안에서 지역구를 증설하고 전국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① 의원의 정수를 현행의 지역구 및 전국구의원정수를 합한 299인을 정수화함으로써 전국구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정수의 증감에 비례하지 아니하도록 함.
 - ②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후보자의 등록기간을 5일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함.
 - ③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을 현재 정당추천후보자는 1천만원, 무소속후보자는 2천만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당추천여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천만원으로 함.
 - ④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함.
 - ⑤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⑥ 호별방문은 금지하되 소형인쇄물을 호별투입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함.
 - ⑦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의 2분의 1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첨부·철거비용과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함.
 - ⑧ 현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하도록 되어있는 부재자 투표지와 분리하여 먼저 개표하도록 함.
 - ⑨ 현재 제1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제1당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전국구의 비례대표성제고를 위하여 지역구의석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구에서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도 당해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때에는 1석의 전국구의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소수당의 의회진출 기회를 보장함.
 - ⑩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종전에는 선거일후 3월(범인 도피시 1년)로 하던 것을 선거일후 6월(범인 도피시는 3연)로 연장함.
 - ⑪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간의 행정지역개편에 맞추기 위하여 지역구 13개를 증설함.

3. 정 당 법

- 정당법(제1246호, 1962.12.31) : (신규제정)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① 정당은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함.
- ②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함.
- ③ 지구당의 범정당원수를 50인으로 함.
- ④ 정당은 대의기관, 집행기관 및 의원총회(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가져야 함.
- ⑤ 기타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해산, 등록 및 그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당법중개정법률(제2089호, 1969.1.23) : (일부개정)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 요건과 성립절차를 보강하려는 것임.

- ① 정당의 범정지역당수를 지역선거구의 2분의 1로 함.
- ② 지구당의 범정당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함.
- ③ 지구당의 창당에는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위임결의를 금지함.
- ④ 지구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지구당소속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 함.
- ⑤ 창당준비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창당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⑥ 정당의 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정당법에 통합함.

○ 정당법중개정법률(제2403호, 1972.12.30) : (일부개정)

개정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조직요건 즉 범정지구당수, 지구당의 분산요건 및 지구당의 범정당원수를 완화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정당관리를 위하여 당원의 입당절차와 정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개정헌법이 정당에 의한 공직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당적의 이탈·변경을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당해산소송을 헌법위원회의 관할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며,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① 정당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당지부제를 폐지함.
- ② 국회의원인 당원의 당원자격 및 정당해산소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③ 입당원서의 서명·날인제를 신설함.
- ④ 벌금액을 현실화함.

○ 정당법중개정법률(제2618호, 1972.12.30) : (일부개정)

정당이 기부 및 친조등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안에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를 추가하였음.

○ 정당법중개정법률(제3263호, 1980.11.25) : (일부개정)

정당의 창당이나 그 존속요건인 창당발기인수와 범정지구당원수 및 범정지구당수등을 감축, 완화하여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의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위를 대폭 완화하여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크게 개방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원화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고루 반영할 수 있게 하며, 당원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정당관여행위를 규제하여 새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민주정치풍토조성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① 정당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당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② 정당의 창당준비에 필요한 발기인수 “30인”을 “20인”으로 완화함.
- ③ 정당의 창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위를 완화하여 대학교 수등 많은 지식인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함.
- ④ 정당의 법정 지구당수를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총수의 $\frac{1}{3}$ 이상 이던 것을 $\frac{1}{4}$ 로 감소함.
- ⑤ 정당 지구당의 의 법정당원수를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인하 조정하여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함.
- ⑥ 정당이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외에도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⑦ 해산되거나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다른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치 못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법(제4017호, 1988.8.5)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당법 중 관련조문을 정비함.

○ 정당법중개정법률(제4087호, 1989.3.25) : (일부개정)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또는 간소화하며,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① 정당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연락소를 읍·면·동까지 둘 수 있도록 함.
- ② 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지역구당수를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함.

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1685호, 1965.2.9) : (신규제정)

산업·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 ①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며, 정치자금기탁자가 그 성명이나 단체명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원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 ② 정치자금기탁자가 그 정치자금을 특정정당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중 2개이상의 정당을 지정하고 그 정당들에 대한 정치자금 배분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정치자금을 배분인도하도록 함.

- ③ 정치자금기탁자가 특정정당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당시에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전부에 대하여 정당소속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인도하도록 함.
 - ④ 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인도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인도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함.
 - ⑤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2090호, 1969.1.23) : (일부개정)
- ① 기탁자가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탁한 정치자금은 원내 제1당에 60%를, 원내 제2당이하에 의석수비율로 배분하도록 함.
 - ② 대통령선거일 또는 국회의원총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공고일까지 기탁된 정치자금중 현금을 그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에 배분 인도하게 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제2619호, 1973.6.14) : (전문개정)
-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국회법 제35조에 의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명부가 제출된 교섭단체에도 정치자금의 배분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그 100분의 70을 기탁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30분 소속국회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
 - ③ 종래 정치자금을 매년 일정하게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지급하던 것을 그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제3302호, 1980.12.31) : (전문개정)
-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배분비율을 새로 정하고 정당의 당원이 납입하는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기탁금등 모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는 한편 그 회계는 공개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를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①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과 회계의 공개를 원칙으로 함.
 - ② 후원회를 정당의 중앙당이 지정하여 둘 수 있게 하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각 1개의 후원회 지부를 둘 수 있게 하며 후원회의 회원은 1,000인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당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게 함.
 - ③ 후원회는 대통령 선거기간과 국회의원 선거기간중에는 금품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 ④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기탁 당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에 따르되 기탁자가 지구당에 정한 배분비율이 기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을 당해 정당의 중앙당이 지급하도록 함.
 - ⑤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4정당까지 100분의 5씩을 균등지급하고 그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의석수비율로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득표비율에 의하도록 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증개정법률(제4186호, 1989.12.30) : (일부개정)

정당의 정치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공정분배로 정당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정치자금 모금에 국민참여확대를 통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여 위하여 국고보조금제도 및 후원회제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증개정법률(제4463호, 1991.12.31) : (일부개정)

정당의 정치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분배로 정당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수당의 보호·육성을 도모하며 공적보조의 확대를 통한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후원회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협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① 지구당의 대표자로 있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후원회를 둔 경우에는 그 지구당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② 지구당의 후원회의 회원수를 100인이내에서 200인이내로 증원함.
 - ③ 국회의원립후보등록을 한 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등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함.
 - ④ 국고보조금은 매년 국회의원선거권자총수에 4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국고보조금수준의 적정화를 위하여 6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총선거와 시·도의회의 의원 밀장의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도록 하고, 그 추가되는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당해 대통령선거등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1. 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을 정당별로 균등 분할하여 우선 배분·지급하고,
 2.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석을 배분·지급하며,
 3. 소수당의 보호를 위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5석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중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시·도의회의원 또는 장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이상 득표한 정당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2석을 각각 배분·지급하고,
 4. 잔액분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그 나머지는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 ⑦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5. 선거관리위원회법

- 선거위원회법(제550호, 1960.6.17) : (신규제정)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직무등을 규정하는 것임.

- ①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임기중 특별한 이유없이 해촉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추천 한 위원은 당해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질하여야 함.
 - ② 각급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게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기관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 ③ 선거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에 부담이 없도록 중앙선거 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함.
- 선거위원회법중개정법률(제566호, 1960.12.21) : (일부개정)
- 현행법 제4조에 의하면 중앙·구·시·군투표구의 선거위원회 5명을 정당에서 추천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을 민의원내에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정당에 균분하되 균분 할 수 없는 원수에 대하여는 의석수순차로 배정하되 의석수순차는 이 법 공포일 현재로 고정시키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이 법 공포후 새로 생긴 정당은 선거관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었으므로 이러한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민의원 원내교섭단체의 의석수순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동된 순차에 의하여 당해 선거위원회를 경질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제1255호, 1963.1.16) : (폐지제정)
- 장차 예견할 수 있는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현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제정된 정당법에 있어서도 정당의 등록, 등록의 취소, 말소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제1385호, 1963.8.6)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일정수의 자를 위촉하게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제1847호, 1966.12.14) : (일부개정)
-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제1916호, 1967.3.28) : (일부개정)
- 위원회의 보조기관을 승격시키려는 것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처장은 일급상당별정직)를 두고 그 밑에 총무국 (총무과·기획과)과 관리국(선거과·정당과)를 둠.
 - ②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3급갑류)을, 지역구선거관리 위원회에는 상임간사(4급갑류)를 둠.
-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제2012호, 1968.5.22) : (일부개정)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그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제2091호, 1969.1.23)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위원은 여당추천위원과 제1야당추천위원중에서 당해지구당당위원장이 추천하는 각1인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증개정법률(제2242호, 1970.12.22) : (일부개정)
 - 선거관리위원회법(제2445호, 1973.1.20) : (폐지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법증개정법률(제3038호, 1977.12.31) : (일부개정)
- 선거관리위원회법증개정법률(제3264호, 1980.11.25) : (일부개정)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두지 않기로 함.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토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증개정법률(제3732호, 1984.7.25) : (일부개정)
 - ① 정당추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활동이 금지된 자 이거나 또는 금지되었던 자로서 추천일전 5년이내에 정치활동을 아니한 자로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법률(제3938호, 1987.11.7) : (전문개정)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제도를 신설하고, 정당의 위원추천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정당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구성에 정당 참여를 보장하며, 개정헌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부규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체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법증개정법률(제4088호, 1989.3.25) : (일부개정)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으로 하여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법증개정법률(제4224호, 1990.4.7) : (일부개정)
각종선거 및 국민투표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인력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조기에 확보·훈련시켜 선거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에 위원회시책등의 홍보업무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동경비에 예비금을 두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법증개정법률(제4496호, 1992.11.11) : (일부개정)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사무처의 총장·차장의 신분을 강화하고 사무처의 기구(선거연수원)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 등의 제·개정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장함.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 분 야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해당 항목 |
|------------|--|
| 憲 政 |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
| 統一·外交·國防 |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
| 內務·地方行政 |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
| 社會·文化·教育 |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
| 產 業·經 濟 |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
| 農 林·水 產 |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
| 建 設 |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
| 科學技術·交通·遞信 |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
| 環 境·保 健 |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
| 法 院·法 务 |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

1. 최근 입법 의견 목록

(1993. 6. 16 ~ 1993. 7. 10)

○ 憲政 84

- 감사원법 개정의견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정안
- 국회법 개정의견
- 선거관련법 개정의견
- 정당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統一·外交·國防 86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견
- 국제협력요원을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의견
-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개정의견
- 여권법 및 여권법시행령 개정의견

○ 内務·地方行政 89

- 고물영업법 및 고물영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폐지에 관한 의견
- 사행행위등규제법 및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社會·文化·教育 9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교육방송원법 제정의견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무노동 부분임금
제3자개입금지
고용보험제
기타
- 독서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영화관계법 개정의견
- 유료직업소개사업법 개정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견
-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 | |
|------------------------------------|-----|
| ○ 產業・經濟 | 98 |
| ○ 가내근로법(가칭) 제정의견 | |
| ○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
|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
| ○ 부정수표단속법 존폐의견 | |
| ○ 산업재산권관련 4개법에 관한 개정의견 | |
| ○ 상속세법 개정의견 | |
|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
| ○ 저작권법 개정의견 | |
| ○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의견 | |
|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의견 | |
| ○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 農林・水產 | 103 |
| ○ 농지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
| ○ 建 設 | 103 |
| ○ 건설업법 개정의견 | |
| ○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 | |
|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
| ○ 도시공원법 개정의견 | |
| ○ 재개발사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
| ○ 지역균형개발법(가칭) 제정의견 | |
| ○ 科學技術・交通・通信 | 105 |
| ○ 관광진흥법 개정안 | |
| ○ DB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
| ○ 위성통신법(가칭) 제정의견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견 | |
| ○ 環境・保健 | 107 |
| ○ 국민건강증진법(가칭) 제정의견 | |
|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의견 | |
| ○ 개정약사법시행규칙에 관한 입법의견 | |
| ○ 응급의료에관한법(가칭) 제정의견 | |
|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
| ○ 전염병예방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 法院・法務 | 110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례법안(가칭)에 관한 의견 | |
| ○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의견 | |

1. 최근입법의견요지

(1993. 6. 16. ~ 1993. 7. 10)

○ 憲政

○ 감사원법 개정의견

-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① 현행 징계요구권을 징계처분결정권으로 고치고, ② 해외 및 지방에 감사원지사를 설치함으로써 감사영역을 확대시키며, 영관급 이상의 전역장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조항을 삭제하며,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수축협을 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도록 함(감사원).
: 국민 93.6.21.,1면; 동아 93.6.22.,2면; 서울 93.6.22.,2면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정안

- ①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재산공개의 등록대상을 5, 6급으로 확대하고, 4급 이상의 연구직·보도직·장학관과 국립대학의 교무·학생처장·기획실장,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2백여개 기관·단체의 임직원, 2급 이상의 군무원, 1급상당의 연구직·장학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1백억원 이상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장관·청장·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주요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을 등록대상에 추가하며,
- ②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등록서류에는 이름 등을 상세히 기재하되 공개시 본인과의 관계만 명시 토록 하고,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등록거부시에는 부양여부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 ③ 군장성의 경우, 재산등록때에는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공개때에는 보안관계를 감안하여 소속 및 계급은 명시하지 않고 국방부소속으로 이름만 표시토록 하며,
- ④ 재산공개 및 등록내용을 심사하는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며 법관·대학교수·지방의원·단체장·덕망가 등으로 5~9인을 선임하며, 보수는 무보수로 하되 광역의회의원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하

- 며 일부등록심사업무를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⑤ 재산등록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되 지방의원 및 지방공직자는 관련조례가 제정되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도록 하며, 재산공개는 중앙공직자 1천 2백 10여명은 9월 11일까지, 지방의원·공직자 5천 7백 60여명은 10월 1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안」을 마련함(정부·민자당).
-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에 있어서, ① 특수직의 재산등록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특수직의 재산등록을 6급까지 확대하면 일반직(4급까지 등록)과 형평성이 문제되고 등록대상이 1만여명(5급까지의 경우 3천여명)이 증가하여 재산등록 관련업무의 부담이 가중되며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층', 6급 이하는 '비관리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관행을 고려한다면 등록대상을 5급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장에서 직접 대민접촉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대다수가 6급인데 이들을 제외한다면 재산등록은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대상에 6급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② 법에 따라 5~9명으로 등록재산을 심사하는 윤리위를 구성할 경우에 총 1천 6백 15명의 윤리위원이 임명되어야 하며 3개월 내에 재산등록 공직자 2만 5천여명(특수직 5급까지)의 등록내용을 실사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연 2백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경우 대우와 관련하여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③ 윤리위의 등록재산 실사효력의 경우에도 은폐된 재산을 시행령 규정만으로 파헤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고, ④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존·비속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세계일보 해설).
- : 국민 93.6.16.,1면; 서울 93.6.16.,1면; 한겨레 93.6.16.,2면; 한국 93.6.17.,2면; 경향 93.6.17.,4면; 한국 93.6.18.,4면; 국민 93.6.18.,3면; 동아 93.6.19.,3면; 조선 93.6.22.,5면; 세계 93.6.25.,3면; 세계 93.6.28.,2면; 세계 93.6.29.,1면; 서울 93.6.29.,2면

○ 국회법 개정의견

-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① 현재 원구성이 여야간 정치협상 대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후 일정기일내에 원구성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② 현행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를 행정부처의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 '교통체신위'를 '교통관광위'로 하고 체신부는 '체신과학위'에 배정하며, ③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한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돋기 위해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활성화하며 예결위의 부별예산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회기중 주례나 지역 구활동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의회에 불참하는 것을 금지하며, 경조사에 화분이나 화환, 과도한 경조금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안」을 마련함(민자당).
- 현행 「국회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① 국회의장의 권한강화보다는 당파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당적보유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하고, ② 상임위의 경우 안기부법개정에 따라 정보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정보위와 법사위·예결위는 그 기능의 특수성과 의원들의 고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행정위에서 대통령비서실·경호실, 정무장관실 등의 소관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③ 그 밖에 인사청문제의 도입,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법률안 발의요청제도의 도입, 위헌법률방지제도의 도입, 의원의 서면질문제도의 강화를 고려함과 아울러 본회의 질의·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1문 1답식 질의허용, 발언회수 제한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져야 함(민주당).

: 경향 93.6.22.,4면; 경향 93.6.22.,2면; 서울 93.6.22.,2면

○ 선거관련법 개정의견(생략)

○ 정당법 개정의견(생략)

○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생략)

○ 統一·外交·國防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현행법은 안기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하여 모두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불과하며 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안기부의 문제는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로서 수사권의 폐지와 예산의 전면공개는 분단국가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므로 존속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의 경우에도 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전문성과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보,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간담회, 1993.6.23).
 - 안기부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①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수사업무를 대검이나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하며, ② 안기부의 정보조정기능을 없애고, 현행 정보조정업무와 보안감사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야 하며, ③ 국회정보위에서 안기부의 예산을 실질심사하게 되 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박상천 민주당의원, 국회정치관계법특위 간담회, 1993.6.23).
 - 안기부가 각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조정권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안기부의 정보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정보기관간의 경쟁이 극소화되어 정보수집 능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안기부 조정판제도를 폐지하고 보안감사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야 함(강수립 민주당의원, 국회정치관계법특위 간담회, 1993.6.23).
 - 안기부의 개정방향으로서 ① '안기부전직원의 정치간여를 금지한다'는 규정과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명문화하고, ② 안기부의 예산과 업무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③ 국회의 외교·통일·국방·내무·법사 예결위 등에서 모두 10여명 정도의 여야의원을 파견하여 특위형식의 정보위를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여 국회의 안기부통제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기밀유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정부·민자당).
- : 동아 93.6.24.,4면; 한국 93.6.24,1·5면; 한겨례 93.6.24.,2·3면; 경향 93.6.24,2·4면; 서울 93.6.24.,3면; 국민 93.6.24,2면; 국민 93.6.30.,2면; 세계 93.7.7.,1면

○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견

- 민주질서보호법안은 안보형사법으로서의 기능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부실한 내용이므로 보안법의 폐지는 절대 불가함(고영주 대전지검 부장검사, 국회정치관계법특위 간담회, 1993.6.23).
 - 남북교류협력법과의 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규정 및 영토조항은 폐지되어야 하고, 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등에 관한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흡수하여야 하며, 찬양고무·국가기밀·결사 등 국헌문란목적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함(김성남 변호사, 국회정치관계법특위 간담회, 1993.6.23).
- : 경향 93.6.24, 4면

○ 국제협력요원을 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그동안 제3세계국가와의 우호증진 및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지에 의사를 파견해 왔으나 최근 지원자가 크게 줄어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병역대상이 되는 의사의 경우 39개월, 봉사요원(사병)의 경우 26개월 등 일정기간 해외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요원을 위한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정부·민자당).
- : 한겨레 93.6.25, 2면

○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의견

-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7km까지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방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시설유형에 따라 대폭 축소하거나 해제키로 하고, 총연장 9백 63km의 해안선 철조망가운데 1백 17.5km를 옮겨 완전 제거하며 후방지역 해수욕장 87개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전면 해제하여 통제권을 행정관서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함(국방부).
- : 경향 93.6.26., 1·3면; 서울 93.6.26., 1·21면; 한겨레 93.6.26., 2면

○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개정의견

- 군에서 징발, 사용중인 사유지가 '92년말 현재 9백 91만평(2천 8백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사유지의 매수·보상을 위해 '88년부터 배정된 재원은 매년 50억원에 불과하여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방부소유 유류국유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을 개정하기로 함(국방부).

: 세계 93.7.7.,21면

○ 여권법 및 여권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및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무기한 외교관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형행 「여권법」의 「특전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발급해주고 일반인의 경우와 같이 필요할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게 하며, ② 현행 여권법상 여행자유화 취지와 상치되는 귀국서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범법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반납명령제도를 신설하고,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여권법 위반자의 경우 현재 최고 5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권발급제한기간을 최고 3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여행국의 법령위반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할 것임(정부·민자당).
: 한겨레 93.6.19.,2면; 경향 93.6.19.,22면; 세계 93.6.19.,2면; 동아 93.6.25.,2면; 한국 93.6.25.,2면; 경향 93.6.25.,2면; 국민 93.6.25.,2면; 한겨레 93.6.25.,2면

○ 内務·地方行政

- ### ○ 고물영업법 및 고물영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폐지에 관한 의견
- 현행 고물영업관련법이 전과자에 대한 허가제한 및 매도인의 신원확인·거래내용 기록관리·부정품 의혹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신분상 제한은 물론 여타 허가업종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초 고물영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함(경찰청).

: 한국 93.6.22.,30면; 한겨례 93.6.22.,14면; 국민 93.6.22.,17면

○ 사행행위등규제법 및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투전기업소의 최고시상금을 현재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사행기구 검사주기를 3년에서 분기마다 하도록 하며, 투전기업소의 신규허가 및 연장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에만 영업하도록 하여 오는 '96년 까지 모두 폐쇄하며, 카지노의 영업허가·지도감독을 규정한 사행행위등규제법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외화회득과 관광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률조작과 기계변조행위가 한차례 적발되거나 투입금, 시상금 위반행위의 경우 두차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경찰청).

: 한국 93.6.19.,1면; 한겨례 93.6.22.,14면; 세계 93.6.22.,21면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면세담배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여행자 등이 면세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담배량을 권련의 경우에는 현재 20갑(4백개피)에서 7월 1일부터는 10갑(200개피)으로 줄이고, 각각 2백g과 1백g까지 허용되고 있는 파이프담배와 기타 담배는 기타담배로 통합하여 2백 50g까지 면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내무부).

: 동아 93.6.16.,29면; 세계 93.6.16.,21면

○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언론의 오보방지를 위해 국가안보나 외교에 관한 비밀, 기업정보 및 사생활정보를 제외한 행정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명시한 「행정정보공개법」을 내년 중 마련할 것임(총무처).
-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부는 물론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만큼 입법부의 정보공개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정보공개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프라이버시권과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의 마련도 필요함(강경근 숭실대교수).

- 정보의 독점이나 행정의 비밀주의 등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개혁정부의 바람직한 책무이므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개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차관과 공보관이 확인창구가 되어 언론사의 확인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장·차관의 정부시책에 대한 브리핑 제도도 활성화해야 함(공보처).
 - 정보공개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입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므로 애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함(김석준 이화여대교수).
 - 행정정보공개법은 공직자윤리법과 병행해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총무처는 업무추진에 있어 담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어 압력행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결국 국민이 자신의 알권리의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함(최홍엽 경실연 정책연구실 간사).
- : 경향 93.6.25.,2면; 세계 93.6.25.,2·9면; 조선 93.6.28.,5면; 한겨레 93.7.9.,9면

○ 社會 · 文化 · 教育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강력구제하기 위하여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에 청첩장, 화환, 신문부고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기로 함(민자당).
- 우리는 요즈음 너무도 많은 것을 법으로 묶으려 하고 있는데 도덕이나 윤리만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며 청첩장을 못돌리게 되면 아쉬워하는 것은 힘없고 넉넉하지 못한 보통사람일 것이고 청첩장을 돌리지 않으면서도 쟁길것은 다챙기는 세도가들의 사정과는 다를 것이므로 결국 청첩장을 못돌리게 한다고 해서 경조사에 얹힌 부조리가 고쳐지는 것은 아닐 것임(조선일보 칼럼).
- 농림수산부는 고소득작물로 화훼를 권장하고 보사부와 여당은 이를 금지하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 것이며 대기업이나 불노

소득계층의 과소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농민들이 생산하는 꽃만을 과소비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모순임(박인재 영남화훼농협 판매장).

- 화환금지방침은 농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규제로 정부의 신경제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농협중앙회).
 - 화훼농가로부터 꽃을 반입하지 않아 현지에서 벼려지는 꽃이 많은데 오는 9월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수출과 내수시장의 기반이 취약한 현 여건으로 볼 때 대부분의 화훼농가들이 전업해야 할 실정임(최기홍 남대문대도꽃도매상가 운영회).
 - 그동안 행사용화환이 사치스럽고 과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은 인정하나 전면금지보다는 화환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진열화환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김정배 화훼협회 서울시지부장).
 - 농림수산부가 꽃수출 확대를 위하여 올해 8억원을 지원한다고는 하나 이렇게 적은 액수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으므로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화환금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하지 말아야 함(꽃재배 농민).
 - 병원영안실 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수의 한벌에 일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장례비용 부담도 크므로 서민들이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이나 한강시민공원 등에서 비영리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김승기 임종의전화 사무국장).
- : 세계 93.6.16.,1면; 조선 93.6.16.,2·3면; 동아 93.6.16.,2면; 한국 93.6.16.,2면; 경향 93.6.16.,22면; 서울 93.6.16.,22면; 조선 93.6.17.,1면; 국민 93.6.19.,17면; 한겨레 93.6.16.,2면; 한겨레 93.6.25.,8면; 한겨레 93.7.9.,6면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매장면적을 9평 이하에서 3평 이하로 줄이고 고동묘지 매장과 납골당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함(민자당).
- 더이상의 가용토지가 묘지로 침식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할 입장에 있는 당정이 묘지 1기당 3평으로 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이며 서울시 조례안의 2평보다 넓은 것이어서 국정

○ 을 책임진 당정으로서는 매장의 문제를 화장유도로 해결하려는 과감한 시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바로 이런 장제의 혼란으로 인해 국민들은 장의업자와 영안실 운영자들의 횡포에 시달려 건강한 의례생활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국민생활에 직결된 각종 의례를 간편하고 건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함(조선일보 사설).

- ① 허가를 받아 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15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② 시·도지사의 허가로 3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게 하며, ③ 60년 경과후에는 납골당에 집단안치시키고, ④ 현재 법적 근거없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납골당, 화장장설치 비용의 국고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며, ⑤ 납골당운영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⑥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허묘지 일제신고기간이 끝날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는 묘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장명령을 내려 강제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⑦ 무허가묘지설치자와 기준면적 초과 묘지설치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임(보사부).
- 현재의 공·시설공원묘지는 현재의 추세로 보아 2010년경에는 공간이 전혀 없을 것이므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공설공원묘지로 재활용해야 함(윤양수 국토개발원 수석연구원, 보사부주최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국토개발에 미치는 묘지정책의 개선방안', 1993.6.30).
- : 조선 93.6.16.,3면; 동아 93.6.16.,2면; 한국 93.6.16.,2면; 한겨레 93.6.16.,2면; 조선 93.6.20.,19면; 동아 93.7.1.,21면; 한국 93.7.1.,21면; 한겨레 92.7.1.,14면; 경향 93.7.1.,22면

○ 교육방송원법 제정의견

- 현재의 교육방송이 텔리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각각 1개씩 가진 전국 규모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의 난맥상 편성주체의 2원화, 재정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① 교육전담매체로서의 교육방송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교육방송을 원격 교육기관으로서 정부출연법인으로 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텔리비전의 경우, 전국규모의 교육·문

화 채널로 하며, 라디오의 경우 에프엠은 학교교육전용 채널로, 에이엠은 한국방송공사 제2라디오를 인수하여 사회교육채널로 각각 운영하고 위성방송을 실시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방송원법」을 제정하여야 함(교육방송공사화추진위원회).

: 조선 93.6.19.,14면; 세계 93.6.20.,15면; 한겨레 93.7.8.,16면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과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의 법정교수 확보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적용되던 대학의 법정교수 확보기준을 계열별 특성과 학생정원에 맞추어 차별화 하는 내용으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교육부).

: 한국 93.7.9.,29면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환경개선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모두 1조 8천 5백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개·보수 및 교원편의시설의 확충에 사용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3천 7백억원씩 배정키로 하고, '98년 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인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마련키로 함(교육부).

: 동아 93.6.22.,30면; 세계 93.6.22.,22면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무노동 부분임금

- 근로자가 보다 많은 임금을 얻기 위해 과업을 택할 때에는 그에 따른 '비용'으로 무임금을 감수하여야 함(경제기획원 관계자).

- 무노동무임금의 고수한다는 것이 민자당의 확고한 방침이므로 현대노사분규가 수습된 후는 물론 정기국회에서도 부분임금체와 관련한 관련법규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김종호 민자당 정책위의장).

- 어떤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임금을 청구할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뿐이지 실제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게 쟁의기간중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뿐임(황정현 경총부회장).

-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전체임금의 5~10%에 불과한데 과거 파업이 끝난 뒤 사용자가 편법으로 지급한 50~60%에 비하면 현격히 적은 액수이므로 파업기간중이라도 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무노동 유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경제계에서 생계비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사측은 영업손실을 막기 위해, 노측은 임금손실을 피하기 위해 파업을 일찍 마치려하게 마련이나 무노동 부분임금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타결을 향한 '보이지 않는 손'이 무력화되므로 부당함(원용권 코오롱 그룹이사).
 - 무노동 부분임금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교환적 측면을 중요시 하면서도 근로자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특정회사에 소속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마땅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주장인 바, 이러한 무노동 부분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가 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한 찬반논쟁을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함(김윤환 단국대교수).
- : 조선 93.6.19.,7면; 경향 93.6.21.,23면; 한국 93.6.22,1면; 서울 93.6.22.,5면; 조선 93.6.23,5면; 국민 93.6.23,2면; 세계 93.6.24,7면; 세계 93.6.28.,16면; 한겨레 93.7.6.,15면

제3자개입 금지

- 노동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과거 군사독재의 표본인 국보위 시절에 제정된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 및 단체행동권에 대해 '제3자개입' 운운하는 것은 사태해결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 : 한국 93.6.22,1면; 서울 93.6.22,5면; 세계 93.6.24,7면; 한겨레 93.7.6.,

15면; 경향 93.6.21.,23면

고용보험제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방안(노동부)과 1백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상공자원부)의 논란이 있으나 '95년부터 고용보험제를 실시한다'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서 정리해고되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비를 보조하는 고용보험제를 실시키로 하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음(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조선 93.6.25.,10면; 국민 93.6.25.,7면; 국민 93.7.5.,17면

기 타

- 공공부문의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국가에 미치는 손실이 크고 또한 사용자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이 부문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기업에 대해 일반사업장과 다른 교섭 및 쟁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쟁의발생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교섭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냉각기간의 연장 및 직권중재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임(노동부).

: 한국 93.6.22.,1면; 서울 93.6.22.,5면; 세계 93.6.24.,7면; 한겨레 93.7.6., 15면; 경향 93.6.21.,23면; 한국 93.7.2.,9면; 서울 93.7.3.,3면

○ 독서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국민독서운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독서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독서기금조성의 제도화, 기업의 도서실 및 자료실에 대한 조세감면, 신축건물의 도서실설치, 값싼 도서우편제도의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서진흥법(가칭)」을 제정키로 합(문화체육부).

: 경향 93.7.7.,12면; 세계 93.6.30.,17면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인사권과 재정권 모두를 법인에 부여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대학의 총책임자인 총학장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해야 하나, 교수회의를 심의·의결기관으로 제도화하고 예·결산과정에의 교수참여 강화, 재임용제의 개선, 법인이사회 구성시 친족이사수를 현행 5분의 2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강화하자는 안에는 반대함(한국사립대총학장협의회 소속 총학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세미나, 1993.7.3).
: 서울 93.7.4.14면; 한겨레 93.7.4.2면; 한겨레 93.7.8.10면

○ 영화관계법 개정의견

- 국내 영화업계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영화시나리오 사전 검열제를 폐지하고(공연법), 외국영화를 상영한뒤 7일 이상 의무적으로 방화를 방영토록 하고 있는 현행 '교호상영제'를 폐지하고 국내영화사의 방화의무제작규정(영화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화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임(정부·민자당).
: 세계 93.6.28.2면

○ 유료직업소개사업법 개정의견

- 부조리근절 차원에서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직업알선과 부녀자약취 등 탈·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직종제한 및 업소별전문화를 주 내용으로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법」을 개정키로 함(정부·민자당).
: 국민 93.6.29.17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견

- 학교시설 및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재원확충을 위해 교육재정을 오는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현재 내국세의 11.8%로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98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교육부).
: 국민 93.6.22.2면

○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 학교주변환경 정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① 학교주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교육감이 설정한 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② 정화구역에 대한 정화요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에 경찰서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담배자동판매기와 무도학원, 무도장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미 정화구역내에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무도장 등 정화심의위원회에서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오는 '98년 말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교육부).

: 동아 93.6.26.,29면

○ 產業・經濟

○ 가내근로법(가칭) 제정의견

- 주부가 대부분인 수공업형태의 소규모 제조업체의 비상근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기업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주부노동력을 적극활용하고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주부의 근로조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간이계약서 형태의 「간이노동수첩제」의 도입, 취업시간 제한, 위탁중단예고제, 최저공임제, 안전 및 보건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내근로법(가칭)」을 '95년중에 제정할 방침임(노동부).

: 경향 93.6.21.,22면; 국민 93.6.21.,18면

○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우수가공식품에 부여되는 KS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량증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에는 공산품과 달리 KS마크 아래 「가공식품」이라는 문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임(농림수

산부).

: 조선 93.6.22.,11면; 서울 93.6.22.,8면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무역업에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자본금 및 개인예금잔고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같은 품목을 계속 수출할 때에는 매건당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뮤어서 승인을 받도록 수출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정부).

: 서울 93.6.24.,3면

○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의견

- 부정수표단속법은 경제질서의 근본을 다루는 법안으로 폐지 또는 반대하는 양쪽의 주장 모두가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되 고의부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방안'과 '선의의 기업인들을 인신구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수표소지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현행법을 보완개정키로 하고 그 내용으로서는 부도수표발행시 금융기관이 48시간 이내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시한을 1개월 연장하여 반의사불법원칙을 명기하도록 함(민자당).
- 이 법이 폐지되면 고의적인 부도사범을 처벌할 길이 없어 신용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폐지는 부당함(법무부).
- 현행 부정수표법은 민사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법리상 문제점 및 수표발행인의 인신구속, 중소기업도산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라는 인위적 결제보장요인에 의해 수표의 신뢰도 및 가치가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부도사범은 현행 수표법, 형법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거나 '불구속원칙'을 명시하여 고의부도사범만 구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안공혁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민자당주최 '부정수표단속법폐지문제에 대한 공청회', 1993.6.30).
- 대부분의 기업인은 절대절명의 심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인신구속이 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발상은 단세포적이라 할 수 있

고, 또한 50억원의 자산이 있는 기업인의 경우, 2억 5천만원의 부도를 내면 구속하여 부도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합리함이 현행법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며,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부정수표사범에 대한 복권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최규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민자당주최 '부정수표단속법 폐지 문제에 대한 공청회', 1993.6.30).

- 법원의 확정판결후에도 부인, 자녀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도어음사범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부도수표범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으므로 경찰의 범죄기록처럼 은행연합회 등에서 신용기록을 관리하여 신용조회를 강화하고 고의범은 현행대로 처벌하여야 함(한만수 변호사, 민자당주최 '부정수표단속법 폐지 문제에 대한 공청회', 1993.6.30).
- 수표는 지급지시서일 뿐 신용창출기능이 없음에도 신용획득을 위해 연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근본문제가 있는 바, 부도즉시 48시간내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고발유제제도로 전환하고, 수표소지인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박희태 민자당의원, 민자당주최 '부정수표단속법 폐지 문제에 대한 공청회', 1993.6.30)
- : 세계 93.6.24., 서울 93.6.26.3면; 한겨레 93.6.26.2면; 동아 93.7.1.6면; 서울 93.7.1.8면; 국민 93.7.3.2면; 동아 93.7.4.7면; 한겨레 93.7.4.15면; 경향 93.7.4.1면; 세계 93.7.4.1면; 서울 93.7.4.2면; 한국 93.7.5.2면

○ 산업재산권 관련 4개법에 관한 개정의견

- ① 「특허법」의 경우 특허가 만료기간전에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정부는 이미 납부한 등록표를 특허제출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특허등록표를 국고에 귀납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② 「의장법」의 경우, 의장존속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의장 중 수출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권을 제3자에게 주도록 했하고 ③ 「실용신안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었으며, ④ 「상표법」의 경우 불합리한 상표갱신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상표권자가 상표사용만료기간인 10년이 지난뒤

계속 사용하려면 그동안의 사용실적(신문, 잡지 등에 낸 광고)을 특허청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고 상표권 존속기간인 10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상표등록갱신을 출원하도록 규정하며, 상표권자가 부주의로 이 기간내에 출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후 6개월 동안 추가로 갱신출원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상표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일간지에만 이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것을 특허청이 전국에 배포하는 상표공보에 무료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산권관련 법안을 마련함(특허청).

: 조선 93.7.2.,23면

○ 상속세법 개정의견

-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직계존비속의 공익법인 이사취임을 제한하고, 기업주들의 출연주식·지분을 통한 경영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주식의 면세한도를 현행 기업총주식의 20% 한도내에서 5~10%로 대폭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키로 함(재무부).

: 세계 93.6.19.,6면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정부공사의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를 설계변경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공사(전기·전기통신·전문공사 3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조정하며, 아울러 덤핑 입찰후 하도급업체에 덤핑을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입찰서에 시공중 하도급 할 부분과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예정가를 별도기재하여 입찰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차액보증금납부방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함(재무부).

: 세계 93.6.18.,7면

○ 저작권법 개정의견

-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과 우루과이라운드,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등으로 인한 저작권보호규정의 강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음·녹화기와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기록매체, 복사기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음반에 대한 대여권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 가운데 중개업의 경우 허가제를 폐지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교과용도서나 학교방송 등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함(문화체육부).

: 동아 93.6.18.,2면; 한겨레 93.6.19.,9면

○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의견

-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법상 모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만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모든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외부감사법」을 개정하기로 함(재무부).

: 세계 93.6.19.,6면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의견

- 영세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10년간 3천억원의 근로자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정부·민자당).

: 한겨레 93.6.22.,2면

○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재벌기업의 주식소유분산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매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보유한도(현행 10%) 등을 폐지하며, 총발행주식의 50%로 되어 있는 상장기업의 무의결권우선주 발행한도를 상법규정에 맞추어 25%로 축소하고, 증권·보험·단자 등 제2금융권에 대하여는 지분소유상한을 설정하며 3년정도의 경과기간을 두어 초과분을 처분토록 하되 초과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오는 '94년에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

「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임(재무부).

: 서울 93.6.26.,9면; 한국 93.6.26.,6면; 한겨례 93.6.26.,6면; 세계 93.6.26.,6면

○ 農林·水產

○ 농지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농지의 소유와 이용·거래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농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의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등 6~7개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농지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농지소유자격 및 소유상한 등의 소유제도, 농지의 조성 및 전용 등과 관련된 이용·보전체계,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유동화 관련 규정, 농지가격 안정, 농지세분화 억제, 오염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지기본법(가칭)」을 마련함(농림수산부).
- : 동아 93.6.17.,2면; 한겨례 93.6.18.,7면; 경향 93.6.18.,7면; 서울 93.6.18.,8면

○ 建 設

○ 건설업법 개정의견

- 건설업면허 개방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① 2백평 이하의 주택이나 1백 50평 이하의 각종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건축주가 무면허로 시공할 수 있었으나 무면허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25평 이하로 제한하고, ② 건설업면허의 발급주기의 경우에는 현행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③ 각종 정부공사에 대해 준공 이후가 아닌 시공중에라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동시에 대표자와 해당 기술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업법」 개정안

을 마련함(건설부).

: 세계 93.7.9.,7면

○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

- 건설공사발주자의 편의와 중소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상향조정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서 6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건설업법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함(정부).

: 국민 93.6.17.,7면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단란주점허가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지역에 국한하여 허용했으나 기존에 주거지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라오케, 스텐드바, 카페 등 각종 간이유흥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 주거지역과 상업화된 일반주거지까지 단란주점의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보사부).

: 동아 93.6.19.,22면; 한국 93.6.21.,22면; 한겨레 93.6.23.,15면

○ 도시공원법 개정의견

- 시설녹지에 건축물설치를 허용하고, 민간이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기로 함(건설부).
- : 한국 93.6.26.,6면

○ 재개발사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요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중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비롯, 지방공사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키고, 도시계획구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나 토지개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개발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세계 93.6.20.,7면

○ 지역균형개발법(가칭) 제정 의견

-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여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이렇게 조성된 공단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50년후에 이를 국가에 무상귀속토록 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 폭을 조정하는 차등지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역균형개발법」을 마련함(건설부).
- 법률시안마련 등 입법실무를 맡은 건설부가 자신의 고유권한인 토지 개발사업은 물론 다른 부처의 업무권한까지 대폭 이양받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평계로 다른 부처의 소관업무를 모두 끌어모아 지역개발업무를 독점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입법 취지대로 지역개발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각 시·도별로 수립하되 중앙정부는 매년 기본정책을 세워 내려보내는 등 행정적인 지원만을 해야 함(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교통부 등 관련부처).

: 세계 93.7.4.,7면; 경향 93.6.26.,7면

○ 科學技術 · 交通 · 通信

○ 관광진흥법 개정안

- ① 관광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와 영업시간제한 등을 크게 완화하는 관광특별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한국관광공사가 전담해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지방지치단체나 민간자본도 5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③ 관광숙박업·여행업 등 관광 사업자들이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④ 여행업체가 여행기획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여행일정과 경비, 숙박

시설, 교통수단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며, ⑤ 휴양콘도미니엄을 불법으로 분양하거나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함(교통부).

: 한겨레 93.6.27., 14면

○ DB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의견

- DB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DB산업육성법」을 현재 정부의 정보산업 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동 법안에 DB구축업·DB개발업·DB관련업의 개념규정과 금융 및 세제지원, 공동사업의 지원, 공공정보 공개, 정보취급전문가 자격제도 실시, 표준화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최인수 고려정보산업 전무, 『DB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내용』,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센터 주최·체신부 주관 'DB산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993.6.23)

: 조선 93.6.25., 23면

○ 위성통신법(가칭) 제정 의견

- 위성통신시대에 대비하여 위성통신 설비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제도를 마련하고 위성통신·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위성을 설치할 경우에는 궤도 및 전파의 혼신 등에 관해 관련국가 등과의 조정을 거친후 위성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적 합의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위성설치후 운용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궤도·주파수대역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위성통신사업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신부장관이 허가하되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외국법인 또는 주주 1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한 법인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성통신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체신부).
- 위성방송사업의 관할권을 공보처에 속하도록 하며, 위성통신과 위성방송의 개념을 명확히 분리하여 통신사업자의 위성방송 참여를 배제토록 하고, 위성으로부터 수신하는 지구국설비를 방송용·통신용으로

분리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체신부의 「위성통신법안」에서 위성방송위탁사업부분을 완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성방송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공보처).

: 한국 93.6.29.,30면; 경향 93.6.21.,2면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견

- 택시회사의 불법·변태경영형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① 택시회사가 운송수익금 전액을 수납·관리하도록 제도화하고, 변태경영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며, ②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운전기사는 개인택시 면허대상에서 배제해 나가기로 하고, ③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연간 일정회수 이상 위반한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와 위반행위자인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택시운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함(정부·민자당).

: 경향 93.7.3.,22면; 국민 93.7.6.,17면; 조선 93.7.7.,2면; 동아 93.7.7.,30면; 경향 93.7.7.,22면; 서울 93.7.7.,3면

○ 環境·保健

○ 국민건강증진법(가칭) 제정의견

- 국민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통점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하고, 각 시·도가 일정지역에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보사부).

: 서울 93.6.20.,15면; 경향 93.6.26.,22면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의견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기 위하

여 히터·믹서기·에어컨 등 소음이 발생하는 특전가전제품에 대해 '소음도표시제'를 도입하고, 아파트·공동주택 및 소음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병원·학교·요양시설 등의 인근에는 공장 등 소음 배출시설의 입지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함(환경처).

: 한국 93.7.5.,22면

○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에 관한 입법의견

- 약사법시행규칙을 개각직전에 개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약사법이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규칙의 재래식 한약장 관련규정을 삭제한 것은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집단시위 등에 밀려 재개정할 수는 없음(최수병 보사부차관).
- 약사의 한약조제는 최근에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이 아니라 '75년에 개정된 약사법상 사문화되어 있던 '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살아난 것일 뿐이고 의약분업은 피 할 수 없는 것이며, 약국에서 하고 있는 한약조제로 인해 큰 부작용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할 경우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한약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타당함(권경곤 대한약사회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공청회, 1993.6.16)
-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제로 약학 전공과정의 대부분이 조제를 위한 주변학문 즉, 약용식물학·생약학·본초학 등에 집중되어 약사들도 한약조제를 위한 학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사의 한약조제는 타당함(이범구 성균관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공청회, 1993.6.16).
- 한의학 전공학생이 6년간에 걸친 과정이수와 국가시험을 거쳐 비로소 한의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4년과정 중 한방관련 1~2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한 약사가 환자를 한방으로 진찰하여 처방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으며, 한약은 진단과정 없이는 어떠한 처방의 도출도 불가능한 만큼 한의대생 집단유급위기를 몰고온 약사법시행규칙의 조속한 복귀와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위한

약사법의 개정이 시급함(현창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공청회, 1993.6.16).

- 한의학과 양의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인데 약사들이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현재의 의료계 실정상 한의학과 약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국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약사 양측 모두 고유영역을 지키면서 깊이 연구한 후 교류에 나서야 함(박찬국 경희대 한의대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공청회, 1993.6.16).
- 보사부는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논란으로 인한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위기사태를 일으킨 지난 2월의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고, 약사회측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에서 약사법시행규칙 철회에 동의해야 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정부는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완전 금지시키고, 독립된 한방의약법을 제정해야 하며, 한의약국을 독립하여 신설하고 공중보건한의사제도를 전면실시해야 함(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 양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의사에게 조제권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원상회복되어야 함(민주당).
- 한방의 과학화와 민족의학 육성이 필요하다면 중국처럼 한의사도 양의학을 배워 양의사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의사도 한의사자격증을 따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한약유통과정의 지나친 마진폭을 양약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의약분업이 이루어져야 함(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 : 동아 93.6.17.,29면; 서울 93.6.17.,5면; 동아 93.6.18.,3면; 한겨레 93.6.18.,14면; 경향 93.6.18.,22면; 한겨레 93.6.19.,14면; 동아 93.6.20.,14면; 서울 93.6.20.,14면; 동아 93.6.22.,5면; 국민 93.6.22.,17면; 조선 93.6.25.,31면; 동아 93.6.25.,30면; 동아 93.6.25.,30면; 한국 93.6.25.,31면; 한겨레 93.6.25.,2면; 세계 93.6.25., 1면; 국민 93.6.25.,3면; 동아 93.6.26.,1면; 한국 93.6.26.,3면; 한국 93.6.27.,5면

○ 응급의료에 관한 법(가칭) 제정 의견

- 응급병원의 '당직호출제'를 확립하는 대신 응급의료종사자의 고의 또

는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가칭)」을 9월 정기국회에서 마련함(정부·민자당).

: 동아 93.6.30.,29면; 서울 93.6.30.,23면; 세계 93.6.30.,21면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현행법상의 연간 1백 80일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2백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직장의료보험요율을 보수의 3~8%에서 2~8%로 조정하며, 정년퇴직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계속 부여하고,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전산화단층 촬영장치(MRI) 등 3종의 고가의료장비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의료보험법개정안」을 마련함(정부·민자당).

: 조선 93.6.16.,2면; 한겨례 93.6.23.,14면; 세계 93.6.30.,21면

○ 전염병예방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에이즈를 2종 법정전염병으로, B형간염을 3종 법정전염병으로 각각 새로 지정키로 하고, 이와 함께 1종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두창을 전염병 지정에서 삭제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에관한법률개정안」 마련함(정부·민자당).

: 서울 93.6.30.,23면

○ 法院 · 法務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불법마약거래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을 몰수하고 마약자금의 '세탁'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유엔에 설치된 '마약불법거래방지협약'의 연내가입을 위하여 ① 마약거래로 얻은 불법수익을 돈 세탁 등을 통해 은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를 예비·음모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마약거래로 인

한 불법수익인줄 알면서 이를 수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③ 마약사범이 재판기간동안 몰수·추징대상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과 아울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전에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시안을 마련함(법무부).

: 세계 93.6.28.,23면; 세계 93.7.9.,23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별법안(가칭)에 관한 의견

- 법사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별법」 시안은 여성계의 요구와는 달리 ① 친고죄를 존속시켜 성폭력범죄를 개인적 차원의 불행으로 돌리고 있고, ② 형법에 강간·강제추행의 죄를 '정조에 관한 죄'의 장에 그대로 두어 성폭력을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행사 내지 '인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③ 성폭력의 범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피해자 증명부담으로 남아 있고, ④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성적 자기결정침해죄(또는 비동의 간음죄)가 누락되어 있으며, ⑤ 성폭력피해자상담소의 설치규정 조항과 허가의 취소, 유사명칭 사용금지, 벌칙 등의 조항을 두어 비법인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⑥ 피해자 보호절차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다만 ① 성폭력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제12조, 제2조 1항 1호), ② '증추행' 규정을 둔 점(제2조 3항), ③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23조), ④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를 반영한 점(제24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한겨레신문).
-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겠다던 법사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폭력대책활동을 해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은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므로 법사위의 시안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함(한국여성민우회·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경실련 등 전국 74개 여성·사회단체 성명).
- 형법 중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침해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를 은폐·조장하는 역효과를

낳는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며, 성폭력 범죄를 행위·대상·주체별로 세분화하여 형벌을 강화·다양화해야 하고,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면서 현재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비법인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절차를 다양화 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할 수 있는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 한겨레 93.6.30,8면; 한겨레 93.7.7,8면

○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의견

-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안기부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전화·통신·서신 등에 대한 감청과 검열을 허용키로 하고, 성폭력형태로 악화되고 있는 전화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수사목적이 정당할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마련할 것임(민자당).
- 국가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도청과 우편검열을 금지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도청과 우편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적인 도청이나 우편검열로 얻은 정보는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며, 이 법에 의한 인가없이 도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5~10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특히 도청이나 우편검열이 허용되는 요건은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수사상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청이나 우편검열을 하게 될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가칭)」안을 마련함(민주당).

: 동아 93.6.17,4면; 한국 93.6.29,2면; 서울 93.7.1,2면; 한겨레 93.7.7,2면; 국민 93.7.10,2면

II. 최신법령 목록

(1993. 6. 16 ~ 1993. 7. 10)

| 공포번호 | 건명 | 공포년월일 |
|--------|---|------------|
| 조약 | 1179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 1993. 6.22 |
| | 1180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환경보호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 | 1993. 7. 3 |
| 대통령령 | 13910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6.19 |
| | 13911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 | 1993. 6.19 |
| | 13912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6.19 |
| | 13913 담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6.21 |
| | 13914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6.24 |
| | 1391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1993. 6.24 |
| | 1391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6.26 |
| | 13917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 1993. 6.28 |
| | 13918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6.28 |
| | 1391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6.28 |
| | 13920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 1993. 6.29 |
| | 13921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7. 1 |
| | 13922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7. 1 |
| | 13923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 1993. 7. 3 |
| | 13924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중개정령 | 1993. 7. 3 |
| 내무부령 | 13925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 7. 8 |
| | 587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18 |
| 재무부령 | 588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7. 8 |
| | 193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25 |
| 문화체육부령 | 1938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용자·예탁및예수에관한규칙중개정령 | 1993. 6.30 |
| | 1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중개정령 | 1993. 6.29 |
| | 2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중개정령 | 1993. 6.29 |
| | 3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중개정령 | 1993. 6.29 |
| 교육부령 | 4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중개정령 | 1993. 6.29 |
| | 634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17 |
| 농림수산부령 | 635 보수교육에관한규칙개정령 | 1993. 7. 2 |
| | 1123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규칙개정령 | 1993. 6.26 |
| 상공자원부령 | 8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개정령 | 1993. 6.18 |
| | 9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21 |
| 건설부령 | 528 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19 |
| | 529 건설업체진단규칙중개정령 | 1993. 6.21 |
| | 530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7. 9 |
| | 531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7. 8 |
| 보건사회부령 | 909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25 |
| | 91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7. 3 |
| | 911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7. 5 |
| 노동부령 | 82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7. 6 |
| | 1004 해운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23 |
| | 1005 해운산업육성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6.23 |
| 교통부령 | 1006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 7. 2 |

국내입법의견조사(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제 9 호

1993年 8月 16日 印刷

1993年 8月 20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株)韓國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000원

국내입법의견조사 발간목록

| 호 수 | 도 서 평 | 면 수 | 발 행 일 |
|-------|---------------------|--------|----------|
| 제 1 호 | 녀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 72면 | 92. 7.29 |
| 제 2 호 |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68면 | 92. 8.31 |
| 제 3 호 | 환경문제 관련 입법의견 | 88면 | 92.10.29 |
| 제 4 호 | 성직자 과세논쟁 | 54면 | 92.11.30 |
| 제 5 호 |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 | 74면 | 92.12.30 |
| 제 6 호 |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120면 | 93. 3.25 |
| 제 7 호 |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 80면 | 93. 4.30 |
| 제 8 호 |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 130면 | 93. 6.30 |
| 제 9 호 |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 118면 | 93. 8.20 |
| 제10호 | 상품권의 법적규제 | 근 간 | |